
第9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財務經濟委員會會議錄 第5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局

日時 1991年12月24日(火) 午後2時

場所 財務經濟委員會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財政役融資基金設置條例案
 2. 서울特別市清掃事業本部設置條例案
 3. 서울特別市市政開發研究院育成條例案
 4. 서울特別市條例및規則公布에 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7. 1991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財政役融資基金設置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2. 서울特別市清掃事業本部設置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3. 서울特別市市政開發研究院育成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4. 서울特別市條例및規則公布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5. 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6.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14時 30分 開議)

○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回 定期會 第5次 財務經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年末입니다. 이제 이 해도 한 6日 지나면 이 해를 다 보내게 됩니다. 年末 個人事業 마무리 하는데도 바쁘시고 議政活動하시는 데도 바쁘신 줄 압니다. 그러나 市民의 福利增進을 위해 議政活動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어저께 財務局所管을 24件의 案件을 늦게까지 審査하여 처리하셨고, 오늘은 企劃管理室所管條例制定 3件, 改正 3件과 지난 12月 3日부터 12月 10日까지 실시한 行政事務監査에 대한 結果報告書 採擇등 모두 7件이 되겠습니다.

委員님들과 協議한 대로 企劃管理室所管條例制定, 改正案 6件을 一括 上程하여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듣고 이에 대한 質疑와 答辯을 모두 마친 이후에 議決할 때는 案件別로 分離해서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特別市財政役融資基金設置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2. 서울特別市清掃事業本部設置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3. 서울特別市市政開發研究院育成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4. 서울特別市條例및規則公布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5. 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6.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35分)

○委員長 朴尙東;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條例및 規則公布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부터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까지 一括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上程된 案件은 配付해 드린 議事日程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審査할 條例案 6件에 대해 企劃管理室長의 提案說明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존경하는 朴尙東 委員長님 그리고 財務經濟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먼저 지난번 市政監査와 豫算審議를 통해서 委員님 여러분께서 저희 企劃管理室에 指導와 協調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企劃管理室에서는 各種 都市問題 解決에 필요한 不足財源을 效率的으로 解決하기 위해 財政投融資基金設置條例와 急變하는 行政需要에 效果的으로 對處하기 위하여 淸掃事業本부와 市政開發研究院 設置에 따른 관련 條例 制定 등 3件의 制定條例案과 3件改正條例案등으로 총 6件의 條例案을 委員님 여러분께 審議 要請하게 되었습니다.

條例案別 主要 制定 및 改正 事由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이 制定될 3件의 條例案中 서울特別市財政役融資基金設置條例案은 市民의 福利需要와 地下鐵 및 都市高速道路의 建設등을 위한 財政需要는 急增하는 반면 一般會計 歲入增加는 限界가 있으므로 當初 設置目的에 거의 마무리된 特別會計剩餘金과 特別會計 및 다른 基金 中에 餘有資金을 統合管理하고, 大單位 投資需要 및 特別會計에 대한 融資등 特殊事業을

위한 財政投資을 위한 것이며, 서울特別市清掃事業本部設置條例案은 清掃 關聯施設의 建設 管理, 쓰레기 分離收去, 資源 再活用등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고 清掃行政의 專門化를 確保하여 보다 쾌적한 生活環境을 維持하고자 專擔機構를 設置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特別市市政開發研究院育成條例案은 巨大都市化에 따른 都市問題의 解決과 서울市政發展에 필요한 諸般政策 代案을 體系的으로 調査 研究하기 위하여 서울市 出損財團法人으로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을 設立, 이를 育成하여 市政發展에 寄與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改正 條例案 3件은 上位法令 改正등으로 기존 條例內容의 一部 變更이나 條文整理가 필요한 것으로 서울特別市條例와規則公布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등 3件이 되겠습니다.

委員님 여러분께서 저희 企劃管理室에서 提案한 案件에 대하여 면밀히 檢討하여 審議하여 주시고 意見을 말씀해 주시면 最善을 다해 反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企劃管理室을 계속 도와주시고 指導해 주실 것을 付託드리면서 條例案提案說明에 따른 人事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企劃管理室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安錫洙; 檢討結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財政投融資基金設置條例案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財政投融資基金 設置의 主要內容은 設置目的이 달성된 特別會計

의 剩餘金과 特別會計 및 他基金의 여유자금을 相互 融通하여 地下鐵, 都市高速道路등 都市基盤施設造成 및 地域開發事業을 支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合理的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地方自治法 第133條1項에 의하면 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 公益上 필요한 경우 基金을 設치할 수 있고, 地方財政法 第110條1項은 基金은 條例로 定하는 特定한 目的을 위하여 適正하고 效率的으로 運營하도록 規定되어 있어 財政投融資基金을 設置하는 것에 있어서 法的 하자는 없다고 判斷됩니다. 몇 가지 事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融資 및 償還條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條例案 第2條에는 基金의 造成財源은 規定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融資 또는 償還條件 즉 据置期間, 利子 償還方法 및 期間등은 重要 事項임에도 이에 대한 規定이 없습니다.

用途指定된 剩餘金 問題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母法에서 剩餘資金의 用途를 指定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76條2에 의하면 區劃整理事業으로 생긴 收入金은 당해 區劃整理事業 以外の 다른 目的으로 使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基金에 預託하는 것은 現行法上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預託金의 收益保障 問題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基金의 預託金에 대하여는 최소한 市中銀行의 公金利 水準의 收益은 保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規定이 없는 것 같습니다.

現物出資의 評價條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條例案 第2條1項3號의 現物出資는 대부분 不動産으로 생각되는 바 評價條件에 따라 加額에 상당한 起伏이 있을 것으로 豫想되므로, 예를 들면 出資時 評價와 處分時評價에 따라 加額이 相異

하므로 評價條件을 明文化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基金運用 公務員 指定 問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基金의 收入·支出에 관한 事務를 取扱하는 基金出納命令官 및 基金支出官등의 規定이 없는 것 같습니다.

清掃事業本部設置條例案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清掃事業本部設置條例案의 主要 內容은 清掃關聯施設의 建設管理, 쓰레기 分離收去, 資源 再活用 등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고 清掃行政의 專門性を 確保하여 清掃 關聯諸般問題를 全擔토록 하기 위하여 清掃事業本部를 設置하는 것으로, 91年 현재 1日 쓰레기 排出量이 3萬 2,000톤, 8.5톤 트럭 3,800臺 분이나, 10年 후인 2001年 경에는 1일 3만 8,000여 톤, 8.5톤 트럭 4,500臺 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가 排出될 것으로 豫想되고 또한 首都圈 埋立地도 그 限界에 다다라 現行 埋立 爲主에서 燒却處理로 轉換하지 않고서는 서울의 쓰레기 問題를 근본적으로 解決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現行 市民生活局 內의 清掃 1·2課에서 別途의 獨立機構인 清掃事業本部를 設置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地域單位 清掃業務의 施行은 區廳長이 계속 管掌하므로 清掃事業本部와의 業務 分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으며, 가급적이면 빠른 時日 內에 清掃事業本部로 一元化하는 것이 效率的이라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 91年度 主要業務報告 資料에 의하면 清掃事業本部는 定員이 372名이나 되는 거대한 機構로써 事業의 性格上 앞으로 계속 組織擴大의 所持가 있는데 豫算의 隨伴과 關聯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審議를 地方議會가 당연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地方自治法 第103條에 의하면 定員은 內務部令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본 뜻을 흐리

고 있으므로 향후 地方自治法 改正時에는 이를 反映토록 하는 方案을 積極 講究하여야 할 것으로 思科됩니다.

市政開發研究院育成條例案에 대해서 報告 드리겠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育成條例案의 主要內容은 都市計劃, 交通, 住宅, 環境 등 각종都市 問題의 解決과 市政發展을 위한 中·長期 政策開發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서울市 出損財團法人으로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을 設立하는 것으로써 91年 7月 현재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政治, 社會, 文化를 除外하고서라도 人口는 全國의 24.4%, 産業別 總生産은 27.0%, 金融機關店鋪數는 41.7%, 綜合所得稅 56.7%, 法人稅 72%, 自動車稅 35.2% 등 各 部分에서 엄청난 集中度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부수되는 諸般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市自體의 研究院을 設置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民法 第32條 그리고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第4條에 의해서 主務官廳의 設立許可 申請이 있는 때에 財團法人에 있어서는 出損財產의 收入으로 目的事業을 원활히 造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設立許可를 하도록 되어 있어 비록 地方自治團體가 出捐한 財團法人은 地方自治團體長의 許可 取消權 등이 있어야 마땅하겠지만 現行法上 市政開發研究院 設立은 市議會의 議決을 얻기 전에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하므로 內務部長官의 正式 許可가 있기 전에 市議會에서 市政開發研究院育成條例案을 議決하는 것은 法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條例와規則公布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條例와規則公布에관한改正條例案의 主要內容은 서울特別市行政에관한特別措置法이 廢止됨에 따라 條例와 規則의 全文 表記方法을 地方自治法에 맞도록 改正하는 것으로써

條例 全文 表記中 國務總理의 承認事項을 서울特別市議會의 議決事項으로 變更하고, 規則 全文表記中 國務總理 承認事項을 削除하는 것입니다. 地方自治法 第16條에 의하면 地方自治團體長은 法令 또는 條例가 委任한 範圍안에서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에 관하여 規則을 制定하도록 되어 있고, 條例와 規則公布에關한條例 第4條는 市長에게만 規則公布權이 주어져 있으나 地方自治法 第63條에 의하면 會議의 運營에 관하여만 地方議會에서 會議規則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向後에는 地方議會議가 地方議會議로써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도록 議會 內部에 관한 事務에 관해서는 地方議會議의 首長인 議長에게도 規則制定權과 規則公布權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報告 드리겠습니다. 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의 主要內容은 서울特別市行政에關한 特別措置法이 廢止되고 地方自治法 改正에 따라 관련 規定을 整備하는 것입니다. 이번 第156回 定期國會에서 地方自治法 改正에 따라 關聯 規定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第156回 定期國會에서 地方自治法 改正時 廣域地方議會議 定期會期를 30日에서 35日로 변경시켰으나 豫算案을 每會計年度 개시 40日 전까지 市議會議에 提出하도록 되어 있는 條項은 改正되지 않아 豫算을 實質적으로 사전 檢討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地方自治法 改正을 적극 推進, 豫算案 提出을 적어도 每 會計年度 개시 50日 전까지 市議會議에 提出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豫算編成條例도 改正, 이를 反映토록 하는 方案을 講究할 必要性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의 內容은 豫算會計法施行令이 改正되어 第95條第3項이 第112條第5項으로 條文이 變更됨에 따라 이 條例의 適用 法條文을 變更된 條文으로 整理하기 위한 것입니다. 條例 第4條第1項에 의하면 「委員會의 會議은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어 委員長에게만 會議 召集權을 부여하는 것은 建設技術審議委員會의 重要性에 비추어 다소 不合理하다고 서울市議會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에서 거론된 바 있음을 報告 드립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質疑·答辯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質疑와 答辯은 議事進行의 效率性を 높이기 위해 一問一答 形式으로 進行하겠습니다. 委員님들에게 諒解를 구하고자 합니다. 長時間 答辯을 企劃管理室長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서서 答辯을 하시도록 諒解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委員님들의 質疑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明鎭 委員님, 먼저 質疑해 주십시오.

○崔明鎭 委員; 먼저 서울特別市財政投融資基金設置條例案에 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條例案 第2條를 보면 自治區로부터의 積立金을 基金의 財源으로 造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地方自治法 第35條에 基本財産 또는 積立金の 設置, 管理 및 처분에 관한 事項은 地方議會의 議決을 받도록 規定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地方議會의 議決을 받아야 될 重要 事業을 地方議會 議決없이 基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條例로 規

定하는 것은 違法 不當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答辯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崔明鎭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設置條例案 第2條4號에 自治區로부터의 積立金과 豫受金이 있습니다만 지금 指摘하신 대로 自治區로부터의 預託과 積立은 議會의 議決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基金의 財源을 逐 列舉를 해 놨습니다만 이런 예를 들어서 열거를 해 놓고 이 경우에 議會의 議決을 별도로 요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議會의 議決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그건 말씀이 안 되지요. 일단 基金으로 財源이 造成이 되면 基金이라는 것은 法的으로 議會에 豫算審議를 받을 필요도 없고, 事業 計劃이라든지 決算에 대해서 報告, 報告만 합니다. 基金에 관해서는 議會에서 전혀 監督할 수 있는 權限이 없어요. 豫算에 대해서 事前承認도 없고 事業 計劃에 대해서도 事前 承認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議會에서 指揮, 監督, 議決을 받아야 될 이런 積立金を 條例로 市長이 마음대로 떡주무르듯이 하도록 條例로 위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議會는 뭘 하고 있습니까? 바지저고리입니까, 議會가?

또 하나 여쭙어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答辯하셔도 좋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崔明鎭 委員; 條例案 第2條에 「地方債 發行으로 造成된 資金을 基金財源으로 조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地方自治法 第115條에 의하면 「地方債 發行은 地方團體의 恒久的 利益이나 또는 非常災害復舊 등에 필요가 있을 때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 發行할 수 있다」 고 明示되어 있습니다.

니다.

이처럼 地方議會 議決을 받아야 될 地方債發行을 條例를 市長에게 全部 委任해서 地方議會 議決없이 마음대로 地方債發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違法不當하고, 아울러서 條例案 3條에 의하면 區民會館 및 體育센터 등의 營繕事業費用과 傳貫金 融資등 基金이 恒久的 利益이나 非常災害 復舊하고 전혀 關聯없는 用途로 使用될 수 있도록 規定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에다 地方債 發行으로 發行해서 基金造成한다는 것은 완전히 違法입니다, 더더욱 違法이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地方財政法 第11條에 의하면 一時借入金은 豫算에 計上된 範圍안의 支出時에만 하도록 明示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條例案 3條를 보면 豫算에 計上된 範圍안의 支出과는 전혀 關聯이 없어요. 그리고 基金이라는 것은 市에서 앞서 序頭에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豫算하고 關聯이 전혀 안 됩니다. 基金은 市에다 豫算承認 받을 필요도 없고, 豫算하고는 전혀 關聯이 안 돼요. 그러니까 地方財政法 11條에도 이게 어긋납니다, 違法이 돼요. 그리고 一時借入金이라는 것은 事前에 地方議會 議決을 받도록 規定이 되어 있어요, 地方財政法 11條에, 一時借入金 빌려올 때 이것을 議會 議決도 없이 이제는 市長이 마음대로 떡 주무르도록 이렇게 條例案을 設置해 준다면 이건 違法이 보통 違法이 아닙니다. 명색이 地方自治時代가 本格的으로 되어서 地方議會가 제 機能을 다해야 되는 狀況인데 地方議會를 한낱 그냥 들러리나 속빈 강정 정도 또는 꼭두각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條例案을 만들어서 上程해야 되겠습니까? 地方議會가 뭐하려고 있습니까? 事前 議決 받아야

될 것을 전부 事前 議決없이 市長이 마음대로 行事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리고 원래 基金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積立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基金입니다.

그런데 條例案 3條를 보면 이게 일정한 目的이 아니에요. 市政의全般에 관해서 使用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名稱을 基金이 아니라 차라리 서울銀行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돼요, 만들더라도. 이 基金이라는 것 본래 취지에도 너무나도 어긋납니다. 이런 投融資基金設置條例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市長은 地方議會의 事前 議決을 받아야 될 地方債 發行이라든지 一時借入金, 自治區로부터 積立金を 크게 數兆원, 앞으로 많이 될 때는 수십조, 수백조까지도 될 수가 있는 이것을 전혀 地方議會 監督없이 마음대로 여기다 쓰고 또 저기다 빌려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더구나 問題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수십조원까지 基金이 모여서 基金을 다른데 融資를 해 줬는데 거기서 破綻이 났다 그랬을 때는 누가 責任져야 됩니까? 議會監督機能없이 牽制機能 없이 議決機能 없이 基金 마음대로 市長이 使用하는데 破綻이 났을 때 결국 그 빚이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서울市民들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地方財政法이나, 地方自治法 여기에 근본적으로 違背되는 內容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 崔委員이 첫 번째 質問한 것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하는 委員 있음)

○崔明鎭 委員; 첫 번째가 條例案 2條에 보면 「自治區로부터의 積立金を 基金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第2條4號지요」 하는 委員 있음)

○崔明鎭 委員; 네, 地方自治法 第35條에 보면 그 積立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基本財産 또는 積立金の 設置, 管理 및 處분에 관한 事項은 地方議會의 議決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規定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條例로써 서울市長에게 委任을 해 버리면 地方議會의 議決이 전혀 필요가 없어집니다. 원래 基金이라는 것은 議會에다 事業計劃書하고 決算報告書는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議會에서 承認도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해서 監督도 할 수도 없어요, 基金이라는 원래 自體가, 豫算에 대해서 사전 豫算 承認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監査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단지 議會에 報告는 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今年에 事業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決算이 나왔다 그것만 報告만 해 줄 수 있어요, 基金이라는 것이.

○委員長 朴尙東; 議事進行發言입니까?

○李秉守 委員; 네. 한 가지 質問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朴尙東; 崔明鎭 委員에 대한.....

○李秉守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한테 한 가지 質問할 것이.....

○委員長 朴尙東; 聯關이 되는 건가요?

○李秉守 委員; 네.

○委員長 朴尙東; 네, 말씀하시지요.

○李秉守 委員; 그런데 이번에 國會에서 中央政府의 각종 基金이 뭐 40 몇 종류나 되는 基金의 管理 문제가 허술하다 해서 이것을, 管理를 一元化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基金管理法이 새로 國會에서 通過됐잖아요. 通過됐는데, 그 法을 이번에

한 것은 管理上의 허점 이런 등등을 一元化시키기 위해서 統制機能으로 이 法을 한 것이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내놓은 財政投融資基金設置條例案을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느냐 하면 서울市가 事業을 하다보면 率下에 뭐 直營이..... 각 獨立團體..... 自生 그게 있잖아요, 등등 基金이 여기에는 남는데 여기에는 부족하다 이랬을 때 市長이 판단해서 여기의 남는 財源을 여기의 不足財源에 充當할 수 있도록 일일이 그 承認을 못 하니까 이런 어떤 기준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이 條例案이, 法の 趣旨가 그렇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런데 지금 崔委員님이 조목조목 質疑를 하시고 지금 李秉守 委員님도 말씀하십니다만 제가 質疑를 하시니까 얼떨떨해서 答辯을 못 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基金의 財源을 여기다 일단 열거는 했습니다. 열거는 했는데 이 열거한 內容 中에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市議會에 나중에 決算 報告만 해도 될 事項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財源으로 한다 하지만, 열거는 해 놓았지만 그 財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別途의 節次를 또 밝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地方債 發行으로 造成된 資金 했는데, 地方債發行을 이 條例에다 基金의 財源에 할 項目으로 넣었다고 해서 地方債가 發行되는 것이 아니고, 地方債는 地方自治法 및 地方財政法에 따라서 별도로 절차를 따로 밝아서 議會 承認을 받아서 그것으로써 基金化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다 이렇게 넣었다고 해서 地方債가 發行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崔明鎭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室長께서 큰 錯誤를 범하신 것 같아요. 이 地方債 發行條項을 보십시오. 第8條 「地方債

發行의 條件, 方法 및 節次와 그 償還에 關係 필요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한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은, 實務的인 것은 規則으로 定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實務的인 節次를 밝는, 事前에 地方債 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承認問題는 議會에서 결정하시 는 것이니까…….

○崔明鎭 委員; 우리가 基金 造成하는 그 條例로 해서 이렇 게 딱 위임을 해줘 버리면 造成된 基金 마련할 때는 條例에 規定된 것은 地方議會 議決이 필요가 없습니다. 基金은 원래 가, 방금 李秉守 委員께서 國會 舉論 하셨는데 國會에서도 마 찬가지로 基金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댁니다. 그래서 法에도 보 면, 이것이 분명히 法에 나와 있습니다. 地方財政法 第110條 를 보면 「地方自治團體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 運用 計劃書와 基金決算報告書를 매 會計年度마다 각각 歲入·歲出 豫算案 또는 決算書와 함께 地方議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地方議會에 提出만 하는 것이지 여기서 歲入·歲出 豫算을 승인 받는 것도 아니고, 監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條例로 해서 委任을 해줘 버리면 地方 議會 議決을 받아야 될 이런 중대한 資金들, 막대한 資金들이 地方議會 事前 承認없이 市長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습 니다, 基金으로 造成이 되어버리면.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崔委員님 質疑하신 것 中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地方債 關係 말씀하시 는데 地方自治法 第115條에 보면 「地方自治團體長은 그 自治團體에 恒久的 利益이 되거나 非常災害復舊 등 필요가 있 을 때는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範圍안에서 地方議會 議 決을 얻어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崔明鎭 委員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基金設置條例案에다 그 財源의 根據 中の 하나가 地方債發行으로 造成된 資金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地方債를 이 法에 불구하고 이 條例로써 議會의 承認없이 發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써 제가 理解가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별도로 地方自治法에 따른 地方債를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範圍內에서 地方議會에서 議決해 주시면 그 發行된 地方債로다 造成된 資金을, 필요하다고 판단된 만큼 發行을 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餘裕資金이 생겼다 그랬을 경우에 基金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科目이 다른 부분으로서로 나눠야 되겠는데 그 때에 그 用途를 명확하게 指定할 수 없을 경우에 基金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崔委員님.....

○崔明鎭 委員; 室長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것이 條例案으로 委任이 되더라도 별도로 地方議會 議決을 받아서 地方債를 發行할 것인데.....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당연한 이야기지요.

○崔明鎭 委員; 왜 그렇게 걱정을 事전에 하시냐 그 말씀인데 여기 條例案에도 이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崔明鎭 委員; 2條에 基金의 財源 해서 地方債가 나왔고, 8條에서 地方債 發行 「市長은 基金의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基金의 負擔으로 地方債를 發行할 수 있다」 2項 「地方債 發行의 條件, 方法, 節次는 規則으로 정한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母法이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그 法에 依據해서.....

○崔明鎭 委員; 그러면 이 條例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條例가. 條例에다 여기 市長이 基金 財源을,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議會의 事전에 議決을 받은 다음 基金의 負擔으로 地方債를 發行할 수 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지요. 그렇게.....

○崔明鎭 委員; 그렇게 넣어서 한다면 이게 成立이 될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저희는 그것을 안 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崔明鎭 委員; 아니, 안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 字句修正을 그럼 저희가 檢討를 해서 지금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그 字句修正을 해 주시더라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地方債 발행 할 때 그 條件은 基金이 恒久的 利益, 非常災害復舊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基金의 用途로 使用될 수 있는 그 난을 보면 3兆지요, 區民會館 및 體育센터 등의 營繕事業費用 이게 어떻게 恒久的 利益입니까, 營繕인데. 체육센터, 傳貫金 용자 어떻게 이게 恒久的 利益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를 알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崔위원님 指摘하신 것도 저희가 충분히 納得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指摘을 해 주셨는데 이 財政投融資基金設置條例라는 좁은 폭으로다 저희가 몰고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한줄 한 줄씩만 끝나면 그냥 끝나 버릴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 設置條例案 하나 議會에서 議決해 주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하나 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마다 필요한 경우가 上

程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自治區로부터의 積立金이나 豫受金이 생긴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區·洞 廳舍나 區民會館에 또는 체육센터 등 營繕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으로 融資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前提를 가지고..... 넣은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崔委員님이 말씀하신 法의 精神, 소위 基金條例의 精神, 여기에, 딱 틀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執行部署로써 이러한 좀 폭 넓은 規定을 해 놓고 承認해 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崔明鎭 委員;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전조의 規定에 따라 自治區로부터의 積立金, 豫受金은 自治法規에 따라서 다시 議會의 承認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議會承認을 받을 때 그 때 그것은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처음부터 걱정을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崔明鎭 委員; 議會 承認件 문제하고 여기에서 一時借入金의 用途 문제, 地方債 발행으로 생긴 資金의 用途 問題, 그런 問題가 지금 違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自治區로부터의 積立金, 地方債 發行으로 조성된 資金, 一時借入金 여기에다 전부 議會의 事前 承認下에 하겠다는 것을 條文으로 다시 넣어 주실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은 당연히 法에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넣어드리지요.

○崔明鎭 委員; 條例에다 다시 넣어야 돼요. 明示를 해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알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明示하고, 여기서 그러면 問題가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恒久的 이익이 안 되는 傳賞金이라든지 체육센터, 區民會館 營繕問題는 그때그때 알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原則이 있어도 例外條項을 더 廣義的으로 解釋해서 그 法 그대로 解釋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그냥 解釋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條項이 하나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資金이 모이면 수조원, 수십조원까지 될 것입니다. 그 막대한 資金이 원래 趣旨와는 다르게 엉뚱한 데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이걸 用途欄이 包括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自治區로부터의 積立金은 自治區의 用途 外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規定이 딱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地方債로 조성된 資金은 地方債 원래 發行條件인 恒久的 利益이나 非常災害復舊 用途外에는 使用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넣으면 돼요. 그냥 包括的으로 넣었어요. 이돈 저돈 여기다 갖다 쓸 수 있고, 運營權者가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法에서는 그런 用途도 使用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서는 포괄적으로 條例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使用할 수가 있어요, 이 法 自體가 다시 이것은 上程하시든지 다시 檢討하셔야 됩니다. 根本的으로 잘못 되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崔明鎭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상 이 設置條例案을 낸 室長의 立場은 당연히 母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母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또 追加的으로는 議會가 別途의 承認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각 項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地方債를 발행해서 여기 저기 쓸 수 있다는 그런 전

제를 말씀하셨는데.....

○崔明鎭 委員;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內容을 이것을 前提로 하고 항상 알고 계십시오. 基金이란 것 자체가 외부 간섭을 절대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法에 나와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基金自體는 그런데.....

○崔明鎭 委員; 基金 自體가 法의 간섭을 못 받아요. 이 議會라든지, 議會에서 전혀 監督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런데 그 基金을 넣어 주시는 役割을 議會가 하시지 않습니까, 監督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財源 중의 하나가.....

○崔明鎭 委員; 그러니까 이 投融資基金 條例案 自體가 일단 확정인 되었으면 그것은 우리가 議會에서 監督을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監督할 수 있다지만, 그러면 監督할 수 있도록, 전부 議會에서 事事件件 할 수 있도록 전부 補完裝置를 마련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基金이라는 그 自體는 설사 崔委員님 말씀대로, 일단 一定金額이 들어간 것에 대한 使用用途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崔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그 돈줄에 대해서는 委員님이 事전에 承認을 해주셔야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地方債發行도 委員님들이 一定金額을 규모를 정해 주시고, 用途를 정해 주셔야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건데.....

○崔明鎭 委員; 여기 條例案을 보세요. 條例案을 보시면 議會 議決을 받아서 地方債 발행 한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

로.....

○崔明鎭 委員; 一時借入金도 마찬가지로, 自治區로부터 積立
金도 마찬가지로요. 地方議會議決을 받아서 넣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러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박하게 地方自治法에 明示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히 저희는 地方債 發行은 그냥
되는 것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崔明鎭 委員; 이것 다시 修正해서 提出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당연히 地方債 發行은 議會의 議決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

○崔明鎭 委員;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法 條項을 읽
어 보시고, 條例案하고 法을 읽어 보시면 그렇게 안 되어 있
어요. 그리고 基金에 관한 基金法을 읽어보셔도 그렇게 안 되
어 있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育成條例에 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서
울市에는 市政開發에 관한 研究 및 運營을 담당하고 市政研
究團을 운영하고 있는 市政開發擔當官 市政研究係 있지 않습
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崔明鎭 委員; 특히 市政研究團은 80年 4月 25日부터 설치
運營되면서 市政의 주요 施策研究와 기타 市長 指示事項, 각
부서 요청 懸案問題 등을 調査 研究하고 있습니다. 현재 地方
專門職 公務員 12名, 그리고 91年 人件費 및 研究 調査費가
1億 3,700萬원이 所要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市 組織 중에
서 行政事務調査, 지금 市政開發研究院의 業務가 研究와 調査
가 들어 있기 때문에 研究分野말고 調査分野만을 專門的으로

하는 서울시 機構를 보면 서울시事務分掌規則 15條에 調査擔當管과 그 밑에 調査1係, 調査2係, 同規則 9條에는 각종 統計 調査 擔當하는 統計調査係가 있습니다.

이렇게 研究도 擔當하는 組織이 市 行政組織에 있고, 市政研究團도 있고, 또 調査만을 專門的으로 擔當하는 서울시 機構가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 92年度에 32億원이라는 막대한 豫算 投資해서 業務가 거의 類似한 研究院을 設立하려는 目的이 뭡니까? 지금 현재 趨勢는 있던 조직도, 기구도 縮小해서 能率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時代의 흐름인데 이것은 時代의 흐름에 逆行하는 發想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設立 意圖가 도대체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市政開發研究院育成條例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討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監查官室의 調査課라든지 統計調査라든지 이런 調査가 붙은 그러한 機能別 部署名을 거명을 하셨는데 監查官室에 붙은 調査는 研究調査가 아니고 公務員들의 또는 市 行政의 흐름에 대한 잘된 것, 잘못된 것을 그 때마다 체크해 들어가는 그러한 實質的인 그런 調査가 되겠고, 그것은 研究用役과 아무 관련이 없는 調査입니다. 그 다음에 統計調査는 企劃管理室에 統計官이 있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市政 統計에 관한 일반적인 事項을 주로 수합하고 調整, 거기에 計數를 정리하는 그러한 機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아까 崔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市政研究團은, 거기에 나온 調査는 實質的으로 市政에 아이디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러한 行政 또는 技術面에 있어서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을 專門分野에 있어서 檢討하고 發掘하는 그러한 것을 通稱해서 調査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러한

일의 흐름이 되겠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명하신 그 調査나 그러한 기구 속에는 지금 市政開發研究院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目的의 調査研究는 包含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崔明鎭 委員; 調査라는 것이 統計調査같은 것이 研究에 활용이 어느 정도 많이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모든 研究는 統計調査가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監査室에서 調査한 그 調査課, 調査1係, 調査2係, 市 行政의 잘 잘못 또 施策을 改善하고 研究發展하려면 監査目的으로 調査했던 간에 市行政 전반에 대해서 조사한 그 調査資料가 市 行政에 아주 중요한 基礎資料가 됩니다. 研究院에서 조사하는 것만 研究調査고, 行政事務 調査한 것은 調査가 아니고, 統計調査도 研究하고는 絶代 關聯이 안 되는 調査라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거기 지금 監査官室의 調査擔當官室에 있는 職員들은 단순한 行政職입니다. 단순한 行政職이고.....

○崔明鎭 委員; 제가 여기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市政研究院의 目的活動中에 하나가 研究와 調査 아십니까? 研究業務, 調査業務.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명칭 그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崔明鎭 委員; 調査라는 것은 물론 지금 室長께서는 研究를 하기 위한 조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調査와 研究가 동등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條例案을 보면. 研究를 위한 調査가 될 수 있고, 調査를 위한 研究도 될 수 있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예를 들면 저희 調査擔當官 職員이 나가서.....

○崔明鎭 委員; 市政研究團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市政研究團.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市政研究團이 지금 서울시의 각종 여러 가지 都市問題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學界라든지 또는 유사한 機關과의 서울시가 協助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일종의 連結고리으로써 저희 市政을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뒷받침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崔明鎭 委員; 研究도 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물론 거기에 研究도,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提供하려면 研究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專門分野로써 나름대로 自的을 갖추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큰 都市問題를 해결하는 데에는 力不足이다 하는 판단이 10여 년 동안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部分은 앞으로 市政研究員이 되면 그쪽으로 統廢습을 해서 連結을 시켜주고, 純粹하게 저희는 開發研究院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시키도록 하는.....

○崔明鎭 委員; 그런데 순수한 開發研究 자꾸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大統領令에 나와 있는 직제에 市政開發擔當官이 研究 專門입니다. 市政開發에 관한 研究, 市政研究係 마찬가지로, 市政研究團 전부 市政에 관한 研究에요. 이런 조직이 엄연히 있는데 이 組織을 운영하면서 그럼 지금까지 이 조직들이 거의 연구 운영을 안 하고 제구실을 못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市政開發擔當官이라는 것은 職制上の 係孫組織인데 市政開發課長이나 똑같습니다. 市政開發課長이

나 똑같은데, 市政開發이라고 하는 分野는 저희 市의 각종 組織이라든지, 또는 市의 어떤 업무에 대한 그 分類問題라든지 이러한 서울市가 갖고 있는 行政 內在的인 모든 흐름을 검토하고 중간에 막힘이 없이 나갈 수 있도록 誘導하는 그러한 행정 次元의 하나의 係孫組織에 불과하지만 이름을 별도로 마땅히 붙일 수가 없으니까 市政開發擔當官이다 이렇게 해서 名稱을 붙였을 뿐이지.....

○崔明鎭 委員; 行政 쪽을 擔當하고 있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行政이 아니지요. 이것은 서울市 機構에 關係되는 서울市 組織에 관계되는.....

○崔明鎭 委員; 組織에 關係되는데 그 分掌事務에 市政開發에 관한 研究라고 나와 있습니다. 市政開發에 관한 研究 및 運營을 擔當하는 職制면 市政開發에 관한 研究와 運營을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分掌事務만 그렇게 있고 그러면 뭐 다른 엉뚱한 研究하고 있습니까? 이런 組織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機構나 組織을 잘 활용하면 굳이 32億원이란 豫算 들여서 市政研究院 설립해야 될 근거가 없거든요.

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研究院育成條例案 第1條와 2條를 보면 財團法人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研究院 基金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엔 우리 서울市가 32億원이라는 豫算支援을 하는데 93年度에는 또 얼마가 될는지 알 수 없지만 市에서는 막대한 稅세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財團法人하고 研究院 基金을 조성하면 議會에서는 전혀 統制 機能이 없어져요, 監查, 調査, 豫算決算審議. 반면에 서울市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條例案 4, 5, 6, 7條를 보면 市政 關聯 諸般研究 調査業務를 優先的으로 研究院에 위탁하고

研究院에 대해 市長은 事業計劃과 豫算承認權을 갖고, 收入, 支出, 決算 및 業務報告를 받을 수 있고, 業務 檢査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外面的으로는 財團法人이니까 議會는 전혀 터치를 못하는데 서울시에서는 行政組織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市 傘下의 行政組織처럼 指揮 監督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서 어떻게 自律性있고 獨立性이 保障된 研究結果가 나오니까? 自律성과 獨立性이 전혀 保障이 안 된 研究라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市에서 要求하는 방향의 價値 부여조차 곤란한 管制 調查研究, 官에서 要求하는 管制 調查研究만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市 行政 모든 것을 合法化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꼭두각시 研究院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앞전에 외부 專門研究機關에 위탁해서 用役發注한 그 研究結果가 서울시에서 원하는 방향의 結果가 안 나오면 막대한 豫算을 들여서 용역 줬던 그 결과를 내팽겨쳐요, 死藏시켜 버려요. 그런 結果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社會福祉指標 90年度 이게 나왔습니다. 이것 얼마주고 研究用役했습니까? 이것이 서울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研究結果가 안 나오니까 대외비로 해서 일체 記者들한테도 公開도 않고, 서울市民은 물론 課長이상만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課長以下 實公務員들도 못 보게 禁止시켜놨어요, 비밀로. 이렇게 外部에다 발주한 연구결과조차도 市에서 원하는 方向이 아니면 死藏시키는데 研究院 設立해서 온갖 감독 다할 수 있는 研究院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원하지 않는 研究結果가 나오면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어디다 씹니까, 그런 연구 결과를.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答辯할까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로 研究院 條例를 만들어서 주면 이것은 서울市長이 마음대로 하는 獨立된 機關이 되어서 議會가 이려고저려고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問題에 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市政開發研究院의 育成條例가 母法이 있어 實施된 것이 아니고 다만 이렇게 設置할 수 있다는 그 上位法은 하나 있습니다만 그 근거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따라서 市政開發研究院은 條例가 廢止되면 다 廢止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걱정되시는 事項들이, 예를 들면 管制 市長의 비위를 맞추는 研究報告書가 나왔는지 안 그러면 아주 못 쓸 研究報告書를 그냥 양산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보다도 매년 저희가 報告를 하는 과정에서 委員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節次를 밟아 가면서 그런 연구를 해 가는 研究院을 委員님들이 가만히 두고 보실리도 없는 것이고, 저희도 그런 研究報告資料를 議會에다 提出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崔明鎭 委員; 사전에 制度的으로 그런 疑懼心이나 疑惑이 갈 수 있는 部分에 대해서는 확실한 對備策이나 安全裝置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마련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련이 되어도 達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制度的으로, 法的으로 安全裝置 마련 안 된 狀態에서 어떻게 잘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杞憂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럼 崔委員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民間 또는 學界에다 준 그런 社會福祉指標와 같은 그러한 것이 外部에 用役을 줬는데 市長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市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廢棄하고 안 받아 들였다 그러면

그것도 못할 노릇이고 또 여기서 만드는 것은 전부 管制로 나오니까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저희 市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崔明鎭 委員;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외부 지금 서울시에서 설립하려고 하는 財團法人 研究院은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간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주는 것 뭐 간섭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간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외부 專門研究機關에는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用役을 擔當했던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 서울시에서 어느 방향으로 研究結果를 해 달라고 事前에 부탁을 한대요, 壓力도 들어오고. 그런데 증명을 해 주는 것이 이것은 자료이고 서울시에서 研究用役 맡았던 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에요. 研究만 맡으면 結論까지 딱 해서 준대요, 이런 방향으로 研究가 나오도록 맞춰 달라.....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누가 과장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방.....

○崔明鎭 委員; 그 정도인데 이런 서울시에서 설립된 이런 研究院이 自律性, 獨立性, 安全裝置가 전혀 保障이 안 되어서 어떻게 좋은 研究結果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學問의 自律性은 있습니다. 學者가 市政開發研究院에 들어와서 자기가 자기 學問을 研究를 하는 사람이 서울시長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연구를 하는 學者라고 하면 그건 학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學問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學問을.....

○崔明鎭 委員; 그것은 理論的으로나 가능하고 實際的으로 그렇게 않습니다.

(「議事進行發言하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崔明鎭 委員님, 잠깐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柳準向 委員;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市 財政投融資基金設置條例나 또 이 市政開發院 條例나 전부가 중요한 事項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놓고 이렇게 討論을 할 때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때문에 市에서 提示한 이 案과 우리 委員 중에서 小委員會를 構成해서 우리 案을 만들어서 서로 討議를 해서 決定짓는 方向으로 小委員會를 構成해서 이 問題를 다 다루는 것을 정식으로 動議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議事進行發言이기 때문에 動議案은 조금 있다 받도록 하지요. 議事進行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參考로 하고, 일단 이 質疑를 조금 더 듣고 停會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小委員會 構成에 관해서 討議하도록 하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地方自治法 11條를 보면 「고도의 技術을 요하는 研究 등 地方自治團體의 技術 및 財政能力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는 地方自治團體에서 처리할 수 없다」 國家에서 처리할 수 있는 事務다 이렇게 規定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便法으로, 서울市에서 할 수 없는 研究院이기 때문에 便法으로 財團法人 形式을 빌려서 研究院을 設立育成하려는데 이것은 違法이라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어디 法이 違法입니까?

○崔明鎭 委員; 地方自治法 第11條에 보면 「고도의 技術을 요하는 研究 등 地方自治團體의 技術 및 財政能力으로 擔當하기 어려운 事務는 地方自治團體에서 처리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高度의 技術을 요하는 것이 어느 부문으로 나와 있습니까?

니까?

○崔明鎭 委員; 지금 研究院 設立하려는 것은 高度의 技術을 요하는 研究가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저희가 設立하는 研究院이 서울 市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市·道가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全羅道도 있고, 大邱도 지금 만들고, 다 만들고 있습니다.

○崔明鎭 委員; 市政研究團 정도에 불과하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市政研究團이 아닙니다. 研究院입니다.

○崔明鎭 委員; 그러면 그 財團法人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쪽의 條例라든지 現況을 좀 提示해 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알겠습니다.

○崔明鎭 委員; 그리고 條例案 第1條와 第4條를 보면 研究院은 自治區와 傘下機關까지 資料提出 要求와 調査를 할 수 있기 때문에 第4條의 研究院에 提供된 資料는 研究 目的以外에 사용할 수 없다는 規定이 있지만 자칫하면 自治區를 견제도 할 수 있고 간섭도 할 수 있고 監督할 수 있는 可能性까지 있어서 意圖는 아니지만 地方自治에 逆行할 수도 있어요, 이 條例案을 보면.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崔明鎭 委員님 걱정하시는 것 저도 백번 다 이해합니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깊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나오네요. 그런데 사실상으로 이 研究院에서 나오는 資料가 예를 들면 저희 생각하고 崔明鎭 委員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겠지만 그 강도면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제가 판단되는데, 이 財團法人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 機構로 하면 유능한 사람들을 저희가 誘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財團法人을 만들어서 法人體로 해서 소속한 그 法人 속의 한 社員으로서 충분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保障이 있기 때문에.....

○崔明鎭 委員; 유능한 사람을 迎入할 수 없기 때문에 財團法人으로 만든다 그런 말씀이시죠?

○企劃管理室長 朴尙東; 그것이 하나가 들어가고.....

○崔明鎭 委員; 그러면 지금 서울시 안에 市政研究團에서 운영하는 專門 研究職 公務員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崔明鎭 委員; 그 사람들은 아주 無能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그 사람들은 專門職으로써 그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한 資格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崔明鎭 委員; 지금 有能한 사람들이, 社會에서 이야기하는 엘리트들이 政府 각 部處에 굉장히 많이 勤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事實이고. 예를 들면 醫師 같은 분들도 開業을 하면 더 많은 副와 名譽도 누릴 수 있고 하지만 公務員으로 들어와서 薄俸에 시달리면서 勤務하는 사람이 있어요. 公務員 職制로 되어 있으면 들어와서 勤務하지 않고 財團法人으로 되어 있으면 有能한 사람이 들어온다 그런 論理가 어떻게 해서 成立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우선 대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崔明鎭 委員; 대우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特勤手當이나 研究手當을 별도로 支拂하면 되지 않습니까? 情報費, 辦公費는 왜 있습니까? 월급은 70萬원인데 情報費, 辦公費는 100萬

원, 200萬원, 1,000萬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職給에 따라서.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이유가, 설명과 關係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만 일단 그 研究院에 從事하게 되는 研究院들의 基準은 제가 볼 때는 물론 博士學位를 가지고 公職者로 단순 公職에 從事하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專門分野로 들어가서 繼續 研究하는 사람도 있고 또 大學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自己希望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外部 與件에 따라서 左右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原則을 딱 정해놓고 그 原則속에 딱 끼우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門戶를 開放을 저희가 해서 많은 研究員들을, 우수한 人力들을 確保하려고 노력을 하면 優秀한 人力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崔明鎭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研究院을 設立 育成해서, 지금 이 條例案에서 指摘되었지만 좋은 研究結果가 나와서 行政發展에 기여한다 그런 保障이나 확률이 현재로는 굉장히 不透明합니다. 그래서 市政研究團도 있고 하기 때문에 既存의 組織을 補強한다든지 그 組織에서 불필요하거나 미비점이 있으면 改善해서 活用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專門研究, 外部에 발주해야 하는 學術研究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研究를 하나씩 하려면 機關에 줄 때 한 두 사람이 그것 합니까, 3億 4億짜리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뭐 1年, 2年간에 걸쳐서 學術研究用役 하나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짧게 나오는 결과도 있지만. 研究院 이것 하나 設立한다고 그래서 1년에 市에서 發注할 수 있는 學術研究 結果를 몇 個나

소화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오히려 既存에 있는 외부 專門研究所 또 大學教授들 그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이 研究院에 들어오려고 안할 것입니다. 꼭 學術研究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한테 發注해야 합니다, 또 學術研究用役 問題도.

그리고 대우 問題로 해서 들어 올 수 없다 그런 것은 特勤手當이라든지 지금 市에서 勤務하는 醫師들도 本俸 말고 특별히 手當을 줍니다, 醫師 手當. 그런 것으로 해서 그것을 保存해 주는 方法 그런 것을 研究해서 迎入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굳이 앞으로 不透明한데 莫大한 豫算을 여기서 投資해서 이렇게 設立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淸掃研究所 이것에 대해서.....

○委員長 朴尙東; 崔明鎭 委員님, 조금 쉬시고 다른 委員들 質疑를 좀 하시도록 하고, 企劃管理室長님 머리 정리 좀 하셔야 되니까. 다른 委員님들 일단 案件이 一括 上程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한 件 한 件 이렇게 處理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괄 上程 되어서 일단 質疑를 좀 하고 바로 停會를 해서 일단 議案을 좀 整理하도록 하겠습니다.

柳委員님 議事進行發言을 얻어서 小委員會 構成에 대한 動議案을 주셨지만 正式 議事進行에 參考를 하고 그 問題는 이따가 저희들이 별도로 討議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秉守 委員 말씀해 주시지요.

○李秉守 委員; 네, 지금 崔明鎭 委員이 指摘한 市政開發研究院 條例內的 問題點 指摘에 대한 發言은 지난번 行政監査때 그리고 또 豫算審議때 이미 發言한 要旨를 중복하고 있어요. 먼저 이야기했던 內容 그대로거든요.

○崔明鎭 委員;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李秉守 委員; 本委員이 보기에는 市政開發研究院 條例問題도 基金設置法 條例에 대한 問題를 責任 市政을 펴는 自治團體長의 立場에서 行政의, 소위 能率性을 제고시키고 合理的인 市政을 펴겠다는 次元에서 이런 制度, 이런 條例가 필요하다 그런 必要性에 의해서 이것을 하겠다 하는 視角으로 우리가 理解를 하면 이 內容에 아무 問題가 없어요. 問題는 全體的인 視角으로 보면 트집잡을 수 있는 모순투성이라는 것은 事實입니다, 本委員이 이것을 全部 把握해 볼 때.

단, 아까 여기 基金設置條例中에 基金의, 소위 그 用途를 서울市長이 마음대로 뭐 여기 저기 주무를 수 있다고 指摘한 內容은 3條에 用途가 1,2,3,4,5號로 限定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問題가 없고, 모든 것이 지금 이제 公開行政, 參與行政, 우리가 代議制度에 의해서 지금 參與를 하고 있는데 현재 市長이 뭐 만년 市長 할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視角으로 볼 필요 없고 단, 이 基金條例 8條의 地方債發行에 대해서 議會의 承認을 받는 이 項目만 들어가면 이 案 自體에 아무 하자 없다고 봅니다, 제가 대충 다 한번 훑어 봤는데.

그래서 이 問題를 어떤 式으로 우리가 審議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論難이 紛紛하기 때문에 잠시 停會를 해서 우리끼리 내부 意見도 좀 調整하고 해서 質疑를 다시 계속하는 式으로 잠시 좀 쉬지요?

○委員長 朴尙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事進行의 능률화를 위해서 한 15분간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45分 會議中止)

(16時 36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企劃管理室長님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停會時間이 약속된 時間보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會議의 能率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一括上程을 했습니다만 項目別로 일단 案件을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委員 여러분 6項에 이것은 改正條例案입니다. 改正條例案에 대해서는 異議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한件 한件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밑에서부터 올라옵니까」 하는 委員 있음)

改正條例案은 일단 通過시켜 놓고, 制定條例案을 일단 質疑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異議가 없으시지요?

(「네」 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委員長 朴尙東; 그리고 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네,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委員長 朴尙東; 서울特別市條例및規則公布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條例및規則公布에 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委員長 朴尙東; 市政開發研究院育成條例案에 대해서 우리가 개진을 많이 하셨는데 이 案에 대해서 委員님들 異議가 없으시죠?

(「質疑하나 하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네, 補完만 조금해 주십시오.

○金炯奎 委員; 民主黨의 金炯奎입니다.

서울特別市市政開發研究院育成條例입니다. 대충은 제가 內容을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확실하게 整理를 할 必要性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目的에 가서 이 條例는 巨大都市化에 따른 都市問題와 서울特別市 行政에 필요한 諸般政策 課題를 體系的으로 調査 研究하기 위하여 設定된 財團法人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條例에 있는 巨大都市化에 따른 都市關係가 뒤에

말하는 서울特別市하고 聯關되는 겁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서울特別市 市政開發이 서울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餘他の 未來指向的인 立場에서 巨大都市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 與否를 말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앞에 目的에 나와 있는 巨大都市化에 따른 都市問題와 서울特別市와의 關係는 서울特別市라는 概念속에 巨大都市가 包含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特別市가 巨大都市化 되는 그러한 것을 前提로 해서 서울特別市를 보는 그런 立場을 갖다 정리한 것이지요.

○金炯奎 委員; 그러면 굳이 巨大都市化에 따른 都市問題 이것은 말하자면 言語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文字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서울特別市 行政의.....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것은 金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인데 저희가 用語를 整理하다 보니까.....

○金炯奎 委員; 제가 이것을 質問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서울特別市를 중심으로 해서 衛星化 되어 있는 다른 廣域의 都市까지에 대한 문제를 研究檢討하는 것인지 반드시 서울特別市만 하는 것인지 그 명확한..... 우리가 育成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條例는 서울特別市 行政에 필요한 諸般의 政策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습니다.

○金炯奎 委員; "巨大都市에 따른 問題와" 이것은 빼도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炯奎 委員; 네, 좋습니다. 그리고 設立된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 이렇게 되어 있는데 財團法人은 民法

第32條 非營利法人이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炯奎 委員; 그러면 出捐財産이 있어야 財團法人이라고 하는 性格이 明確化 되는데 出捐財産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현재 50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우리 室長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財團法人이라고 하면 出捐財産의 集團體가 됨으로 인해서 財團法人 設立의 基礎가 되고, 그 運用收益에 의해서 財團法人이 소기의 目的을 達成하리라고 보는데 50萬원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炯奎 委員; 50萬원 가지고 어떻게 財團法人이 運用收益할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은 일단 出捐者인 市長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出捐한 것이고, 이제 議會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出捐을 하게 됩니다.

○金炯奎 委員; 네, 그러면 지금 현재 50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市長이 일단 財團法人을 만들기 위한 형틀의 基本的인 出捐財産이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면 현재 50萬원이 通帳에 들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되어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무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서울特別市長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서울特別市長 이름으로 돼서야 出捐財産이 아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서울特別市長이 出捐者이니깐요.

○金炯奎 委員; 그래서 제 얘기는..... 네, 좋습니다. 뭐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하고 예를 들어서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自治開發研究院이라고 하는 財團法人이 또 하나 있다고 假定을 합시다. 그럴 때 우리 서울시議會에서는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과 서울特別市 自治開發研究院과 똑같은 그런 內容의 財團法人이 設立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서울시廳은 이 育成 條例案에 대해서 育成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 條例를 서울시議會에서 通過可決이 되었다고 보았을 때 지금 서울시議會에서 出捐財産으로 해서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이라고 하는 財團法人을 所定節次에 의해서 設立이 되었을 때, 가칭 그와 유사한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自治開發研究院이라고 하는 財團法人이 생겼을 때 서울시廳에서는 이 育成 條例案에 의해서 계속 育成할 그런 支援,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별도 財團法人을 이 市政開發研究院 育成條例로 다 支援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별도 育成 條例案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金炯奎 委員; 예를 들자면.....

(「아니, 이 條例案에서 두 個나 세 個가 設立이 되었을 때에 市政開發院 말고 다른 開發院에도 育成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하는 委員 있음)

○金炯奎 委員;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이것 혼돈하면 안 됩니다.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 育成條例案입니다.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과 똑같은, 그 目的과 똑같은 일을 가칭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自治開發研究院이라고 하는 財團法人이 있을 때 서울시廳에서는 育成할 用意는 없느냐

그런 야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죄송합니다만 金委員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全潤杻 委員; 아니, 二元化가 아니고 지금 金委員님 말씀은 市政開發研究院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 옆에다 別途의 研究院을 또 하나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을 때에 市에서는 市政開發研究院만 支援할 것이냐, 같은 目的으로 되어 있는 研究院이 또 設立이 되었을 때에 여기에도 支援할 생각이 있느냐?

○金炯奎 委員; 할 用意가 있느냐?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러니까 別途의 地方自治研究院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셨으니까 생겼다는 것은 생길 만한 이유를 검토를 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判斷되기 때문에 그 때는 支援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똑같은 任務를 띠는 그런 自治研究院이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건.....

○金炯奎 委員; 그것은 우리 室長께서 法理를 誤解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財團法人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民法 第32條 法人으로서 主務官廳의 定款과 모든 소정 節次에 의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알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設立해서, 主務官廳의 인가만 되면 設立이 되는 것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特別市에서 出捐한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과 똑같은 目的으로 해서 主務官廳에 承認을 받았을 때 서울시廳은 이것을 育成 支援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은 法에서 育成할 수 있도록, 育成이라는 것이 결국 支援한다는 이야기인데 支援할 수 있도

록 길이 터져 있더라도 重複이 되는 것은 저희가 支援할 수가 없겠지요. 다만, 部分的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市政開發研究院 內에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만 그 보다는 거기서 또 나름대로의 특이한, 우리가 좀 參考로 할만한 그런 組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活用했으면 좋겠다 할 때에 活用은 할 수 있겠지만 育成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니까 育成이란 것이 돈 支援해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特別市市政開發研究院은 出損者가 우리 서울特別市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炯奎 委員; 特別市로 되어 있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炯奎 委員; 그런데 어느 財閥에서 財團法人 서울特別市自治開發研究院이라고 하는 것을 出損을 해서 내가 財團理事長이 되어서 서울市長이 出捐한 이 財團法人과 똑같은 연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로 市政開發研究院과 같은 立法目的에 競爭적으로 좋은 開發研究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서울시에서 支援育成할 用意는 있겠지요? 活用할 때는 거기에 대가를 支拂해야 되니까 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필요한 경우에 活用은 되겠습니다만 基本的으로 育成은 안 되겠죠.

○金炯奎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이 研究院 育成條例인데 제가 보기에는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 설치에 관한한 設置에 따른 비슷한 意味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왜 그

러나 하면 아시다시피 財團法人은 民法 제32條 法人으로서 所定節次만 하면 設置가 되는 것인데 出損財産을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設置하는 것을 議會에서 同意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뜻과, 또 거기에 따르는 財源을 出捐하는 것을 支援해 달라고 하는, 育成이라고 하는 表現으로 이렇게 두 가지 意味가 지금 이 條例案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事實입니까,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그 設立目的과 出捐根據를 明示하는 그런 條例가 되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니까 設置도 同意해 달라?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設置目的과 出捐根據.

○金炯奎 委員;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設置目的.....

○金炯奎 委員; 設置目的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 기관이 필요하다 하는 설치 그 두 가지 意味가 지금 되어 있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습니다. 設置目的과 出捐根據.

○金炯奎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設置를, 예를 들어서 同意를 하든, 안 하든 第32條 法人에 의한 所定節次만 하면 設置가 되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저희는 할 수가 없죠.

○金炯奎 委員; 예를 들어서 出損財産 問題..... 그러시고, 第2條 第1項의 基金은 서울特別市, 自治區를 包含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逐條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自治區가 지금 獨立된 地方自治團體인데 서울시의 22個 自治區와 이것을 同意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自治區 同意는 議會承認이 안 났으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죠.

○金炯奎 委員; 그러면 育成 條例案이라고 하면 議會에서 굳이 必要性이 있을까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이것은 지난번 常任委員會에서도 崔委員님.....

○金炯奎 委員; 아니 그 때는 다른 意味이고, 이것은 구체적인 條例案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 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답변을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自治區를 포함한 다든가 아니면 그 以外者의 出損金으로 造成한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善意의 出損者가 났을 경우에 구태여 그것을 拒否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넓은 뜻에서 이 條項을 넣어 놓았습니다. 뭐 이것이 서울特別市가 누구를 등에 업고 그것에 기대서 하려고 하는 기본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모든 것을 조치하되 혹시라도 향후에 그런 어떤 자연 발생적인 그러한 事案이 있을 때 門戶가 없어서 그것을 저희가 協議를 못하는 그러한 일은 事前에 門戶개방함으로써 事前에 좀 터놓자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金炯奎 委員; 네, 그러시면 自治區까지는 무슨 큰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만 그 이외의 자의 出損金으로 造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이외의 者의 出損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상적인 出損金으로 해서 표기해 놓은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예상적인 것입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 出損財産이 들어왔을 때는 獨立的으로 財團法人의 議決에 의해서, 審議에 의해서 받아들일 일 그럴 작정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저희 생각은 基金이 出損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제3者 다시 말하면 지금 왜 이런 예를 드느냐 하면 타市·道의 일부가市 自體 資金이 모자라니까 金融團에서 協調를 해서 都市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해서 金融團에서, 어떤 個人이 아니고 그런 金融團에서 一部를 出損한 그런 事例가 있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事例가 서울이라고 또 없을 까닭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단순한 한 가지입니다. 他市·道 事例를 하나를 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경우에 이것을 받는 방법은 理事會의 決議를 거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네, 좋습니다. 신설된 條例案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고 세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諒解를 해 주십시오.

또 하나 문제는 出損金으로 해서 基金을 만드는데는 지금 아시다시피 財團法人은 出損된 財産의 總額에 의해서 研究檢討, 모든 運營이 충당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앞으로 독립적으로 이것이 自立을 할 수 있다고 하는 基金의 限度는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研究院의 基金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基金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왜 그러냐 하면 財團法人으로 設立을 해 놓고 밤낮 독립적으로 운영도 못하고 서울市에서 밤낮 支援만, 일반 豫算에서 出損만 된다고 하는 立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저희가 豫定을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그 機構를 운영해 보면서 별도 저희가 檢討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分野를 확대하고 필요에 따라서 人員을 擴大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結論에 따라서 그때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

니다만 지금 平均해서 연간 한 60億원 정도의 일단 出損으로써 基金化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니까 이 問題는 今年度 豫算에 지금 31億원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炯奎 委員; 31億원이 있는데, 이 31億원이 사실은 基金이 아니고 거의 소모성경비입니다. 그렇지요? 말하자면 임대 事務室하는 10億원 빼고 21億원은 지금 소모성경비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草創期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炯奎 委員; 네, 그러한 입장인데, 앞으로 1년에 60億원을 한 번만 서울市 豫算에서 出損이 된다면 이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은 獨立的으로, 그 利子收入이라든지 활용해서 그 受益을 올려서 自體的으로 運營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요.

○金炯奎 委員; 그러니까 매년 60億원을 支援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그렇게는 안 되겠죠.

○金炯奎 委員; 그것은 분명히 室長께서 의지를 가지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잘 알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이것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出損金에 대해서 第3條 「서울特別市는 研究院의 施設費 및 運營費와 第2條 基金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出損金을 豫算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出損金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재산입니다, 基金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炯奎 委員;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혼돈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第2條에 있는 基金은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의 定款에 해당하는 事項이고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金炯奎 委員; 지금 條例案 내용 중에서 第2條에 있는 基金과 第3條에 出損金이 있는데 第2條에 있는 基金은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의 定款 事項으로써의 基本財産이고 第3條에 있는 出損金은 우리가 豫算範圍 내에서 다소 出損을 支援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第2條 基金에 관한 문제는 그 育成條例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財團法人의 基本財産에 속한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基金과 出損金에 대한 그 명확한 구분을 우리 室長께서 좀 말씀을 해 줘야 이 條例案이 新設되고,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저의 지금 見解로써는 出損者 立場에서, 서울시의 立場에서 보면 出損金이고, 그것이 研究院의 立場으로 들어가면 基金이 된다고 저는 判斷을 하고 있는데요.

○金炯奎 委員; 그렇다면 基金, 出損金 두 個 條文을 넣을 필요가 없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죠. 研究院 立場에서 보면 基金이 되어야 되고, 서울시長의 立場에서 보면 議會에 承認을 받을 때는 出損金으로 承認을 받아야지.....

○金炯奎 委員; 아니, 문제는 兩面性的의 문제를 다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가 내놓은 條例를 議會에서 承認을 받자고 하면 지금 育成을 主目的으로 하는 條

예의承認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비록 이 條例案 타이틀이 서울特別市市政開發研究院 育成 條例案으로 表記가 되는 것이 정확하고, 이 타이틀 自體가요. 그래서 앞에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 이렇게 안 되어 있고 財團法人 소리가 빠진 育成條例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서 질문했던 類似 財團法人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補充하기 위해서 제가 그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 그 設置와 育成이라고 하는 양면 두 가지 意味가 있다 하는 것을 아까 對答으로써 제가 確認을 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이런 立場에서, 育成한다고 하는 立場에서 거기에 強調한 意味를 둔다면 出損金만 넣어도 이 條例는 될 것이고,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 自體의 定款에서 자기들이 基金化를 해서 이렇게 自體 運營을 해야 되겠다 이런 意志를 담으면 되는 것인데 育成條例案에다 왜 基金도 넣고, 出損金도 넣고 이렇게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러니까 돈을 出損을 하는데 그 出損에 相對方이 財團法人으로 들어가서 그 出損된 돈이 財團法人에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어떤 名目으로 지원이 되는거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들어갔느냐, 무슨 活動費로 들어갔느냐, 뭐 이런 소위 出損金의 성격 規程을 위해서 우선 基金을 정리를 해 놓고 그 基金에 充當하기 위해서 出損者 측에서 보면 그것은 出損金으로써 그 基金을 充當한다 하는 그 相對方의 소위 出損金에 대한 用途를 분명히 밝히기 위한 그런 裝置라고 보지 별다른 뜻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金炯奎 委員; 그렇게 생각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왜 그러냐 하면 第3條 出損金이 있

는데 "研究院의 施設費 및 運營費와 第2條의 基金을 充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出損金を 豫算의 範圍안에서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니까 우리 議會 立場에서는 豫算의 範圍라고 하는 것은 出損하여 주면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에서 아껴서 基金에다 넣든지, 자기들이 運營費에 쓰든지 그건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의 意志 아닙니까, 意志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基金하고 出損金하고 나눌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指摘을 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第2條 基金問題는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의 자체적인 定款 記載事項으로 생각이 들고, 第3條 문제는 우리 議會에서 豫算 範圍 내에서 가급적 出損할 수 있다 하는 그런 事項으로 봐 집니다. 그것은 同意하시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지금 金委員님 말씀도 맞습니다. 定款에다 그것은 委任해도 觀瞻을 事項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第5條에 가서 「研究院은 매 會計年度의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를 作成하여 서울特別市長에게 제출하고 그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것은 主務官廳인 서울市長이 監督하는데 꼭 필요한 事項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 문제도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 意志를 되받아서 自體的인 定款 記載事項을 이 條例案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이 듭니다. 第6條 「研究院은 매 會計年度의 收入·支出決算書

를 作成하여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아 市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이것도 좋습니다.

第7條 「報告 檢査등 市長은 監督上 필요한 때에는 研究院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業務를 監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꼭 좀 보고 싶은 것은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의 定款이 作成되어 있으면 그것을 좀 봤으면 하는데요. 定款作成이 안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朴尙東; 金委員님!

○金炯奎 委員; 네, 定款은 그럼 추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委員長 朴尙東; 없으면 나중에 보여 주도록 하죠.

○金炯奎 委員; 네, 그것을 좀 보여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炯奎 委員;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은 서울 市民의 稅金에 의해서 出損된 財團法人인 만큼 또 이 財團法人의 性格上 主務官廳인 行政官廳에서만 監督을 받게 되어 있는 이런 立場이기 때문에 議會에 소속된 議員으로서 이 財團法人이 좀더 健實하게 발전되어야 되겠고 또 그 研究結果도 아주 훌륭한 일이 있어야 되겠다고 염려한 나머지 이 育成 條例上으로는 모든 것이 主務官廳인 서울市廳에서만 이 財團法人인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을 監視, 監督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울 市民의 出捐된 稅金으로써 된 만큼 議會에서 이것을 대단히 지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잘 運營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過程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財團法人의 定款에다 財團法人 스스로, 예

를 들자면 議會의 監査에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意志의 條件部的인 그런 定款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室長 意見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저는 委員님들 監査뿐이 아니라 여기 나와서 報告하고 하는 것까지도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뭐 어디 누구 살림 내주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判斷되기 때문에 다 좋은데, 과연 體系上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좀더 研究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定款에 자기가 스스로 監査를 받을 수 있다, 또는 監査를 받아야 한다고 規定했다 하더라도 市議會에서 그 出損機關에 대한 監査를 할 수 있는 規定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저는 最小限度 그것을 論議를 하다 안 되면 그 財團法人을 終局的으로 어느 部署에서 컨트롤하든지 그 部署가 監査를 받거나 常任委員會가 열릴 때에는 그 常任委員會에 나와서 要求를 하시면 常任委員會에 나와서 報告하고 參考人으로 陳述할 수 있도록까지는 措置가 되어야 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金炯奎 委員; 네, 그리고 財團法人의 속성상 清算이 되었을 때는 그 出損된 殘餘財産은 그 유사한 財團法人體에 寄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이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못 되었을 때 이것을 清算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清算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건 일반적으로 清算節次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金炯奎 委員; 일반적인 清算節次에 따라서 하는데, 市民이

낸 稅金에 의해서 出損되었는데 그 돈을 다른 機關에다 줄 생각이나, 清算할 때는. 일반적인 清算은 일반 清算節次에 의해서 終局的으로 殘餘財産은 그 類似機關에다 寄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特別市가,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는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이것은 저희는 다른 機關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地方財政法上에는 自治團體로 歸屬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金炯奎 委員; 財團法人인데?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러니까 自治團體가 出損한 그러한 財團法人이 清算을 하게 될 경우 歸屬財産은 自治團體에 歸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면 만일에 아까 第2條第2項에 있는 그 이외의 者의 出損金이 만일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은 出損된 이상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權利主張할 것은 없습니다, 일단 出損한 以上.

○金炯奎 委員; 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金炯奎 委員; 그리고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이 발전에 좀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財團法人의 理事長은 어떤 분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글썽 누구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 어떤 사람.....

○金炯奎 委員; 네, 물론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이것은.....

○金炯奎 委員; 예를 들어서 財團法人 같으면 理事가 구성이 되고, 理事會가 있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물론이죠.

○金炯奎 委員; 또 거기에 대한 財團法人의 所定機構가 있지 않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렇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런 機構가 있고, 또 아까 말하는 우리가 市政에 도움되는 資料의 研究院도 있을 것이고, 지금 室長께서 構想하고 있는 研究院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財團理事長은 어떤 사람으로 補任이 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그 構想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이것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理事陣에 의해서 選任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學問的인 分野에 다소 좀 폭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되고, 욕심으로 말하면 완전히 컴퓨터 같은 그런 다재다능하고, 여러 가지 경륜도 많고 財團研究院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소양도 있고 指揮力도 있고 한, 그리고 어디까지나 研究院이 獨立機關으로써 유지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所信과 行政을 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골라야 되겠는데 제 말씀이 金炯奎 委員님 들으시기에 조금 막연한 정도일 겁니다만 저희는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아주 대단히 훌륭한, 좋은 분으로 理事長이 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서울特別市市政開發研究院育成條例案에 대해서 제가 個人的인 意見같으면 育成條例案에 앞에다 財團法人이라고 넣는 것이 더욱더 확실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目的에 나왔기에 안 넣었는데 넣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네, 題目이니 만큼 그렇게 해야 財團法人 서울特別市 市政開發研究院을 育成하겠다고 하는 뜻이 되지 만 일에 그게 안 들어간다면 유사 財團法人에도 育成을 해야 될 그런 必要性的 확대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 意見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議事日程 3項 서울特別市市政開發研究院育成條例案은 이제 質疑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質疑 終結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는데 滿場一致로 이 市政開發研究院 育成 條例案은 通過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시죠?

(「異議가 하나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사전 附帶條件을 달아야지요」 하는 委員 있음)

○李聲九 委員; 저기 아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室長께서.

○委員長 朴尙東; 뭐를요?

○李聲九 委員; 거기 定款에 아까 삽입 됩니까, 지금 우리 崔明鎭 委員이 걱정하고 있던 것도 市政開發研究院을 설치하면 기존의 用役을 件件이 줄 때보다 더 研究結果에 대한 사용을 執行部가 더 恣意的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우선은 제일 걱정입니다. 그것을 市議會 次元에서 걱정을 좀 덜하게 할 수 있는 方法은 運營方法에서 定款에 市議會의 監督을 強化할 수 있는 恣意的인 方法을 아까 金炯奎 委員이 代案을 마련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제 이야기는 條件을, 안전핀을 定款에 넣는 條件으로 同意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補充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아니 가만히 계세요.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李聲九 委員; 그러니까 財團.....

○委員長 朴尙東;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너무 裝置를 金炯奎 委員님께서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具體적으로 여기 지금 條例案 第1條부터 第9條까지 전부 하나 하나 質疑를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맡겨봅시다. 맡겨보고, 우리가 監査를 할 때 반드시 監査資料에 의해서 監査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來年度 市政開發院이 만들어져서 正常的인 절차에서 잘 못 갈 때, 實績이 없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決議에 의해서 저는 솔직히 開發院 廢止에 우리 同意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諒解를 좀 하고 합시다.....

(「委員長님, 제가 正式으로 動議發言을 하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네.

○柳準向 委員; 豫算審議에서도 충분히 다룬 것이고, 오늘도 진지한 討論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承認을 하되 단, 財團法人 定款 作成時에 우리 市議會가 直接, 間接적으로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이것을 챙겨주시고, 또 이 開發委員會가 效率性있고 能率的으로 잘 운영되도록 해주기를 바라며, 만약에 별 效率性이 없으면 來年度에는 이 문제가 變動될 可能性도 있다는 前提下에 이것을 承認할 것을 正式으로 動議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일단 知性人들이니까 한번 맡겨봅시다.

○柳準向 委員; 네.

○委員長 朴尙東; 柳準向 委員의 發言을 企劃管理室長께서 參考로 하셔서 意見이 反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잘 알겠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런데 定款에다 그런 것을 삽입할 수 없습니까? 市議會 監督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넣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柳準向 委員; 그러니까 方法이 있으면 넣어 달라는 條件을 제시했고.....

○李聲九 委員; 對答 좀 듣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主務官廳의 立場에서 모든 監査를 일반 行政府가, 저희 執行部가 받는 것과 똑같이 市議會 監督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基本으로 基調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議會에서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것을 한 번 명확하게 검토해서 그 최대한 線까지 保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聲九 委員;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保障하는 條件으로 柳委員님 動議를 再請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異議가 없으시죠?

(「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市長이 제출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네」 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通過된 것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안

(뒤에 실음)

.....
○委員長 朴尙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淸掃事業本部條例案과 서울特別市財政 投融資基金設置條例案에 대해서 조금 質疑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質疑 하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네, 말씀하시지요.

○全潤杻 委員; 淸掃事業本部 設置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서울市民이 가장 지금 先決 문제로 처리해야 될 것이 淸掃問題하고 交通問題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本部를 설치해서 市民의 불편한 사항을 덜어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質問을 하겠습니다. 淸掃本部 設置의 當爲性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委員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問題는 市民生活에 있어서 극히 아주 皮膚에 와 닿는 것 중에 淸소가 제일 큰 問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淸소가 잘되면 여러 가지 環境이라든지 또 生活의 水準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돋보이고 또 실지 그렇게 內實化 될 수 있는 그런 狀況이라고 判斷이 되는데 이 쓰레기 發生量이 하루에 지금 3萬 2,000톤, 8.5톤 트럭으로다 3,800臺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타고, 안 타고, 버릴 것, 안 버릴 것 전부 따지지 않고 한데 몰아서 난지도 100여 萬坪에다 계속 갔다 부어서 난지도를, 100餘 萬

坪 되는 땅을 70m가 넘는 완전히 산으로써 變貌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年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金浦海岸埋立地에다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埋立地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가는 時間 오는 時間 따질 것 없이 별도 輸送道路도 만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外國에서 얼마 전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先進諸國에서는 分野別로 이런 것이 다 먼저 생겼습니다만 쓰레기를 燒却을 하는 그런 體制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埋立이 아니라 埋立가지고는 한이 없다 그래서 燒却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燒却을 하기 위해서 燒却場을 外國에서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혹시 委員님들께서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木洞에 하루 150톤 정도의 쓰레기를 燒却하는 燒却場을 지금 만들어서 거기서 電氣와 煖房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의 우리 쓰레기 對策,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10年後에 이대로 놔두면 하루 약 4萬톤 이상의 쓰레기가 계속 더 나올 것으로 判斷되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清掃에 대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벌써부터 했습니다. 그 하던 것을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들어서면서 쓰레기 처리방식을 埋立에서 燒却으로 전환을 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기술습득과 아울러서 지금 활발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全潤杓 委員; 간단하게 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래서 이 쓰레기는 앞으로 그냥 單純하게 지금까지는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주워 모아다 난지도에 갖다 버리는 그러한 節次가 아니고, 보다 더 科學的으로 그리고 技術的으로 處理해야 된다는 그러한 명제가 걸

려 있기 때문에 清掃事業本部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全潤杓 委員; 그럼 清掃本부와 區廳間의 業務分掌과 運營方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清掃事業本部가 생김으로 해서 區廳에 清掃에 관한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區廳에 관한 清掃機能은 그대로 살아 있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區廳의 쓰레기는 住民들로부터 發生된 것을 그대로 모으는 機能 밖에는 없습니다. 단순히 모으는 기능 밖에는 없기 때문에, 區廳이 쓰레기를 단순히 모으는 狀態에서 끝나 버리고 그 나머지에 관한 處理가 清掃事業本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全潤杓 委員; 그럼 本부로 넘어 갑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쓰레기는 本부로 移管되는 것이지요.

○全潤杓 委員; 移管되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全潤杓 委員; 區廳에서는 모으기만 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렇습니다.

○全潤杓 委員; 그럼 나머지 作業이라든지 모든 것은 本부로 넘어간다는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습니다.

○全潤杓 委員; 그런데 지금 水道事業本部가 설치가 되어서 運營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事業所가 區廳長 傘下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住民들의 不便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것도 그러한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區廳의 清掃擔當 機能은 그대로 存置하게 됩니다.

○全潤杓 委員; 이것이 水道事業所에 지금 한 3個 區廳 내지 4個 區廳이 한 事業所가 管掌을 하고 있는데 우리 市民들이야 주로 區廳長한테 申告를 하지 어디 事業所長한테 申告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事業所長한테 일일이 區廳長이 이야기를 해서 다시 나오면 二重的인 부담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떠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水道問題하고는 조금 根本적으로 다릅니다만 이미 말씀 드린 대로 家庭에서 나오는 것을 또는 街路에 있는 것을 주워 모아서 일정한 場所에 모아 놓으면 그때로부터 그 쓰레기는 清掃事業本部에 의해서 作業이 開始가 됩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이제 市民들께서 分離收去를 해 놓은 그 狀態를 끌고 가서 再活用할 것은 전부 再活用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태울 것은 태우는데 그대로 들어가고, 또 埋立해야 될 것은 그대로 衛生處理하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가 壓縮車輛을 사서 壓縮車輛에 전부 집어넣어서 金浦埋立地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狀況이 계속되면서 市民들의 分離收去에 대한 協助問題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 그러한 狀況이 전개가 됩니다.

○全潤杓 委員; 이 業務部는 뭐하는 業務分掌입니까? 本部의 機構가 나와 있는데 機構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擔當業務가 뭔지?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清掃事業本部는 名稱을 清掃事業本部로 했습니다. 清掃事業本部는 本部長과 2局, 1研究所, 2事業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局은 2個인데 하나는 行政擔當이고, 하나는 技術擔當이 되겠습니다. 行政擔當名稱을 일단

清掃局으로 했습니다만 清掃局에서는 清掃行政의 綜合企劃, 市民弘報, 쓰레기 分離收去, 資源의 再活用, 收去·運搬 業務의 現代化, 人力 및 裝備의 管理 이렇게 크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施設管理局에서는 清掃 關聯施設의 綜合計劃 樹立과 調整, 그리고 燒却場 등 清掃 關聯施設의 建設과 管理 등을 管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清掃研究所에서는 燒却處理 技術開發과 쓰레기 收去, 埋立研究改善, 蘭芝島 活用方案 講究, 糞尿處理 研究 등을 專擔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個 事業所에서는 燒却處理 技術開發과 쓰레기 收去, 埋立研究改善, 蘭芝島 活用方案講究, 糞尿處理 研究 등을 專擔하도록 되어 있고, 그 2個 事業所는 現在 蘭芝島處理事業所가 있습니다. 또 衛生處理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個 事業所를 여기다 編入을 시켜서 清掃事業本部를 發足を 시킬 그런 案으로서 提案을 했습니다.

○全潤構 委員; 이 業務部는 뭐하는 業務分掌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清掃局內에 總務部, 業務部, 作業管理部 3個 部가 있습니다만.....

○全潤構 委員; 業務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業務部는 事業用品의 管理와 건전한 清掃財政의 運營, 그리고 合理的인 清掃 手數料의 管理 등 清掃豫算 및 物品의 效率的 運營管理를 圖謀하고 방대한 清掃 施設 建設의 完璧한 支援機能을 遂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全潤構 委員; 그리고 施設 1·2部는 뭐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施設 1部는 清掃 尖端施設에 대한 設計用役과 土木施設 설계의 體系的인 推進 그래서 設計用役의 總括과 土木施設의 設計推進, 建築 및 構成, 機械設備, 電

氣發展, 環境汚染 防止 이렇게 되어 있고, 施設2部는 清掃施設에 대한 施工業務, 土木·建築施設 工事 發注 設計 및 工事 監督입니다. 그래서 施工業務의 總括과 土木·建築施設 工事 發注 設計와 工事監督이 있고 그 다음에 機械·電氣 역시 마찬가지로 環境汚染 防止施設 역시 같이 包含되어 있는데 이것은 土木部에 해당하는 部門이고, 施設1部는 機械施設에 관한 그런 部分이 되겠습니다.

○全潤杓 委員; 지금 이 機構가 이렇게 出發始點에서 방대하게 해서 나가야 될 理由가 있습니까? 지금 現在는 課가 2個가지고도 해 나갔는데, 물론 來年度부터는 分離收去도 되고 모든 것이 좀 달라지지만 이렇게 機構를 방대하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좀 納得이 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草創期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委員님들의 見解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清掃業務가 지금 어느 한 部分에 당장 많은 業務가 떨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部分的으로 조금씩은 同時에 出發해야 될 그러한 저희 나름대로 隘路가 있습니다. 그래서 部分的으로 同時에 出發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全體 人力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全體機構는 必要하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判斷을 해서 終局的으로는 이것이 糞稼動이 되면 11個 燒却場과 金浦海岸埋立地, 蘭之島處理場 이런 것이 同時에 檢討가 되어 들어가는 그런 狀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全潤杓 委員; 제일 먼저 소각장이 건설되어서 稼動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來年度부터 着工이 되면 93年 中반쯤 될 것입니다.

○全潤杓 委員; 93년 중반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全潤杓 委員; 그렇다면 清掃研究所 같은 것은 말이지 지금 당장에 設置해서 研究를 하는 것은 人員있고 豫算 있으면 研究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清掃研究所 같은 것은 先進國의 文獻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參考를 하고 93年 以後에 꼭 필요하다고 認定하면 하는 것이 좋지 지금 이것 1年씩이나 미리 研究하는 段階로 지금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上級 公務員을 두고 엄청난 職員을 거기에 配置할 理由가 있나 하는 생각이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사실 뭐 그렇게 또 理解하시면 또 그런 면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清掃가 완전히 質과 量 面에 있어서 또는 어떤 處理技術에 있어서 완전히 舊態를 벗어나는, 완전히 體制가 轉換되는 그런 狀況으로 지금 들어갈 채비를 서둘러서 지금 거의 着手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研究所에는 研究라는 것이 委員님들 잘 아시겠지만 반드시 外國에서 잘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할 수도 없는 거고, 模倣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 쓰레기에 대한, 또 特性研究가 필요하다고 外國에서도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쓰레기에 대한 特性研究라든가 이런 것이 並行해서 實施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燒却場이 생긴 후에 이러한 研究所가 잘 안되니까 한 번 해보자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부터 같이 研究를 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로서는 웬만하면 同時에 出發할 수 있도록 委員님들께서 協調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全潤杓 委員; 네,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清掃本部가 設置가 되었다고 假定을 했을 때에 우리 서울市民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革新的으로 改革할 수 있는 室長의 腹案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확실히 對答할 수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물론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 機構를 만들어서 일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來年 1月 1日 부터 달라지는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霧圍氣 自體가 저희 行政體制부터가 轉換이 되면서 市民들에게 接近해 들어가는 그 方式 自體가 달라지고, 저희로서 쓰레기에 대한 市政의 意志가 우리 市議員님 여러분들의 많은 協調속에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그런 자체로써 우선 하나하나 施設도 改善해 가면서 方式이 改善되면 많은 市民들께서 共感이 있으리라고 確信을 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質疑 끝나셨어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네, 崔明鎭 委員 質疑하시죠.

○崔明鎭 委員; 서울特別市清掃事業本部設置條例案 第1條를 보면 이 條例는 쓰레기 및 廢棄物에 그렇게 用語가 나옵니다. 여기서 쓰레기와 廢棄物은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저희가 用語 定義를 할 때에 쓰레기 가운데서 일반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그냥 一般 家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業體에서 나온다는지 하는 그러한 其他 어떤 加工된 쓰레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糞尿處理.....

○崔明鎭 委員; 그것을 廢棄物로.....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을 廢棄物로 저희가 定義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崔明鎭 委員; 그것이 辭典에 나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제가 辭典을 아직 못 찾아보았습니다.

○崔明鎭 委員; 쓰레기는 純粹한 우리 한글이고, 廢棄物은 漢文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漢文이고.....

○崔明鎭 委員; 네, 用語 그 內容은 똑 같습니다, 말의 뜻은.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行政上 分類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崔明鎭 委員; 行政上 分類는 그것은 國語辭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第1條 設置目的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用語는 그리고 제가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市가 지금 設置하려는 清掃事業本部 業務를 보면 서울市 既存行政機構인 서울市와 그 所屬機關 職制에 관한 大統領令 第10條에 나와 있어요. 서울市 條例 組織編 第28·29條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세 군데죠, 그러니까. 大統領令하고 서울市 條例 組織編하고, 그것이 清掃1課, 清掃2課의 業務와 同一합니다. 條例上에 나와 있는 本部 業務를 보면 동일한 業務를 擔當하는 部署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새로 本部하는 이름 하에 巨大한 行政機構를 新設한다는 것은 이 名分도 없고 妥當性이 없다고 봅니다. 地方自治法 第102條를 보면 "行政機構의 設置 運營에 있어서 그 合理化를 圖謀하고 다른 地方自治團體와의 均衡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規定이 있어요. 그리고 同法 第103條를 보면 "地方 公務員의 定員 管理에 있어서 그 規模의 適正화와 運營의 合理化를 圖謀해야 한다"는 規定이 있습니다. 동일한 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部署가 大統領令하고 서울市 條例 組織에 의해서 清掃1課, 清掃2課로 해서 있는데 거기다가 특이한 業務가 없는데도 不拘하고 本部

라는 거대한 組織을 新設한다는 것은 法 精神에도 맞지 않고 說得力도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서울시의 쓰레기 問題가 이렇게 姑息的이고, 委員님들 늘 말씀하신 대로 無事安逸하게.....

○崔明鎭 委員; 아니 새로 본부 하나가 생긴다고 그래서 쓰레기 問題 解決되니까? 業務內容이 똑같아요. 지금 이 條例案에 나와 있는 本部 業務하고 서울시 清掃1課, 清掃2課 業務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도 그냥 複寫를 해놨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 質疑를 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전 答辯하라고 그래서 答辯을 했는데 계속.....

○崔明鎭 委員; 答辯 해보십시오.

○委員長 朴尙東; 質疑도 좀 簡略하게 해 주시고 答辯도 좀 簡單하게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清掃 業務 自體가 지금 좋은 指摘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의 지금 大統領令에 보면 清掃2課로 清掃業務를 擔當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安逸한 狀態에서 많은 清掃원들이 嚴冬 雪寒에 리어카를 끌다가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그런 事例까지, 安全事故까지 나는 그러한 狀況속에서도 그대로 끌고 나온 것이 바로 서울시가 清掃行政을 그렇게 주의 깊게, 깊숙하게 과고 들어가서 觀察하지 못했던 그런 점이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난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난지도에 갔다 버리면 되니까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1970年代 중반에 이 쓰레기 問題를 보다 더 劃期的으로 改善해 보자 해서 그 當時에 清掃局을 만들었었습

니다. 만들었었는데, 그 清掃局을 만들어서 그 때부터 좀더 擴張을 시키고, 계속 發展을 시켜서 오늘날 하던 생각과 같은 생각을 벌써 그때부터 했더라면 오늘 이런 問題를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緣由든 간에 그런 事由로 해서 일단 국이 과로 떨어지고, 完全히 清掃는 모든 市民들의 苦痛속에서 다같이 그것을 解決할 수 있는 그러한 能力과 意志가 事實은 별로 없었다. 意志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語弊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方法에 대한 적극적인 努力을 對處를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서울特別市 清掃事業本部가 생긴다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쓰레기 아닌 또 쓰레기, 우리가 發見치 못했던 쓰레기까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또 다른 쓰레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事業本部 設置를 해서 오히려 市民들의 쓰레기를 보다 더 根本적으로 對處하겠다고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 저는 委員님들께서 오히려 더 깊은 配慮와 拍手를 보내주실 것으로 알고 事實 이 案을 냈던 것입니다.

○崔明鎭 委員; 本委員의 質疑 要點은 既存의 서울시 組織과 機構에 大統領令과 서울시 條例에 의해서 清掃1課, 清掃2課가 있어서 同一한 業務를 取扱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새로 本部라는 그 業務를 보면 同一해요, 清掃1課, 清掃2課에서 했던 業務하고. 그런데 굳이 組織이라는 것은 지금 地方自治時代를 맞아서 上部組織도 大幅縮小 改編하는 方向으로 해서 下部組織으로 권한 이양도 하는 狀況인데, 특별히 機構를 확대 改編해야 할 理由가 없는데, 동일한 業務部署가 있고,

또 새로운 業務를 맡는다면 또 事由가 됩니다. 동일한 業務를 맡는데 왜 그것을 擴大 改編하느냐 이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그 內容 中에 收去라든가 쓰레기 處理는 같으리라고 생각이 되십지만 內容을 보면 資料, 資源의 再活用이라든지 사실상.....

○崔明鎭 委員; 아니 그 業務 깊은 內容 보니까 전부 동일해요, 業務가 동일합니다. 條例案 그리고 第4條 下部機關으로 둘 豫定인 清掃研究所, 蘭芝島쓰레기綜合處理事業所, 衛生處理場中 清掃研究所를 除外하고는 既存에 있던 組織들입니다.

○企劃官理室長 朴宗雨;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그리고 新設清掃事業本部가 이 既存組織을 특별히 管掌해야 할 理由는 없어요. 서울市長 職制로 있잖아요, 서울市長 傘下組織으로. 굳이 여기서 현재까지 잘 되고 있고, 특히 난지도쓰레기綜合處理事業所는 내년 말 閉鎖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지금 現在의 機構나 人員보다는 縮小되어야 됩니다, 狀況이.

그런데도 이것을 擴大改編하는 것을 보면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清掃事業本部를, 巨大組織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밑에 下部組織으로 둘 것이 없어서 즉, 말하자면 必要充分條件이 안 되니까 억지춘향이 式으로 꿰맞추는 것이 아닌가 그런 疑惑까지 들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난지도쓰레기處理場은 우리 崔明鎭 委員께서 指摘하신 대로 난지도가 문을 닫으면 그냥 이렇게 깨끗이 문 닫는 狀態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事後管理가 더 어렵습니다. 점점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고 하니.....

○崔明鎭 委員; 아니 事後管理가 現在의 狀態, 쓰레기를 現在

계속 埋立하고 管理하는 狀態보다는 事後가 더 어렵습니까?
더 人員이 많이 필요하고, 組織도 많이 필요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人員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清掃業務를 맡은 데서 계속 맡아야 되기 때문에 清掃事業本部.....

○全潤杓 委員; 仁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全潤杓 委員; 난지도 쓰레기가 仁川으로.....

○崔明鎭 委員; 그대로 있는 거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지요. 난지도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 지금 管理하는 사람을 난지도 쓰레기事業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崔明鎭 委員; 그리고 條例案 第4條를 보면 清掃研究所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清掃研究所. 그런데 이것은 난지도쓰레기綜合處理事業所와 衛生處理場의 業務分掌을 보면 研究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에 나온 그 組織表에 서도 나온 것 난지도 활용방안, 糞尿處理研究, 燒却處理 技術開發, 쓰레기收去, 埋立研究 이걸 지금 現在 난지도쓰레기綜合處理事業所하고 衛生處理場에서 研究業務로 하고 있는 거예요. 研究業務中에 중요한 業務가 研究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그 研究가 아닙니다. 蘭芝島 綜合處理場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崔明鎭 委員; 아니 거의 同一한 研究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제 말씀 좀 들으시죠. 그 난지도쓰레기處理場 自體를 지키는 것은 그것은 事業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現狀을 지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어디가

무너져 내렸다든지 또는 어디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 漏水가 생기면 이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現狀을 管理하는 것이 백만 평을 管理하는데, 崔明鎭 委員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만 평을 管理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淸掃研究所는 그 난지도 쓰레기를 그대로 둘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檢討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基本的으로 저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저것은 지금 많은 研究機關의 이야기들이 무엇이고 하니 最小限度 앞으로 3·4년 檢討를 해야만 結論이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淸掃研究所를 만드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機構를 늘려서 그것을 두었다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저것이 백만 평이 우리 市民들에게 되 돌아온다고 하는 날에는 정말로 지금 이 淸掃本部에 대해서 積極적으로 支援해주신 우리 市委員님 여러분들 정말 喝采를 받으실 겁니다.

○崔明鎭 委員; 그러면 방금 난지도 쓰레기가 研究業務 分野가 現在는 거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난지도쓰레기 綜合處理事業所設置條例 第2條 職務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이 쓰레기 衛生的 終末處理, 2項이 쓰레기 衛生理處理 方法의 研究發展, 3項 쓰레기의 衛生的 處理로 生成되는 副産物의 處理와 利用方法에 관한 研究" 職務 세 가지 中에서 두 가지가 研究예요. 그리고 곁들어서 서울市 衛生理處理場設置條例 3條職務編을 보면 "1項이 糞尿의 衛生的 終末處理, 2項이 糞尿의 衛生的 處理로 生成되는 副産物의 處理와 利用方法의 研究發展, 3項이 糞尿의 衛生理處理 方法에 研究發展, 4項이 其他 糞尿의 衛生的 終末處理에 關係되는 事項" 네항 中에서 두항이 研究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러니까 그 두개 事業所가 清掃事業本部로 들어가서 그 機能을 제대로 發揮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崔明鎭 委員; 清掃事業本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研究機能이 제대로 發揮된다는 것은 說得力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 本常任委에서 附帶 條件部 通過를 했습니다만 市政開發研究院 여기 研究院이 뭘 하려고 생깁니까? 市政에 관해서 研究하면 이 清掃問題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問題 중의 하나인 清掃問題에 대해서 研究 안 하고 그러면 무슨 研究를 한단 말입니까? 研究分野는 專門的인 研究院을 設立 했으면 여기에다 맡겨야지 組織을 이렇게 하는 法이 어디가 있습니까? 난지도 쓰레기處理事業所나 衛生處理場의 業務하고 重複되게 또 하나 研究所를 신설하는 것이 뭘니까? 무슨 組織이 이런 式으로 동일한 業務를 部署만 달리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分散시켜 놓는 組織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을 擴大 改編해서 本部를 만들어야 될 아무런 妥當性이나 根據가 없어요. 넓게 보면 서울시에 있는 保健環境研究院에서도 쓰레기나 清掃에 관해서 研究를 하고 있습니다, 넓은 意味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清掃事業本部를 設置해야 될 根據나 妥當性, 說得力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이것은 계획을 取消하고 此後에 이런 巨大機構 本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다시 舉論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參考的으로 말씀드리면 條例案 第5條에 公務員의 種類도 規則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公務員의 種類를 規則으로 정한다는 規定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條項을 읽어 보십시오. 몇 條 몇 項 무슨 法.

(「時間도 많이 가고 하니까 5분간이나 10분 停會하고 다시 續開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네.

○崔明鎭 委員; 잠깐만 여기 答辯만 잠깐 듣고 제가 마칠게요. 公務員의 種類는 規則으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條例案 第5條는 規則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무슨 法 몇 條 몇 項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地方自治法 第103條 第1項에 있는데요.

○崔明鎭 委員;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地方自治團體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서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內務部 令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으로 정한다....."

○崔明鎭 委員; 어디에 종류가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종류도 地方自治團體 規則으로 정한다는 條項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원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定員이라는 概念이 그속에 職級別 그 것이 다 包含되어 있는 것입니다.

○崔明鎭 委員; 公務員의 種類가 職級別 定員에 포함된다는 동일한 내용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죠. 公務員의 種類와 職級別 人員을, 그것을 規定할 때 그것을 전부 定員이라고 表現을 하면 그 定員속에는 公務員의 種類와 職級別 人員이 다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崔明鎭 委員;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되면 公務員의, 지금 예를 들면 淸掃事業本部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公務員 種類 아닙니까? 衛生處理場, 난지도쓰레기處理事業所 이제 種類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은 公務員의 종류가 아니고, 그것은 事業所 名稱이고, 그 안에 있는 公務員의 定員은.....

○崔明鎭 委員; 그러니까 그 안에서 勤務하는 公務員,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드리면 本部長, 清掃事業本部の 本部長 이것은 公務員의 種類 아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本部長이라고 하는 것은 職責이고 公務員의 種類에는 안 들어가지요.

○崔明鎭 委員; 種類에는 안 들어갑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崔明鎭 委員; 그럼 種類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公務員의 種類라면 行政職 職級別이니까 그것은 管理官이면 管理官, 理事官이면 理事官 이렇게 들어 가야죠.

○崔明鎭 委員; 여기 法대로 解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第103條가 그 定員은, 분명히 定員이라고만 못 박아 나왔습니다. 여기에 種類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러니까 食口라고 하면 애는 빠지고 어른만 들어가는.....

○崔明鎭 委員; 定員하고 種類는 辭典을 찾아보시면 전혀 틀립니다. 이것이 분명히 定員이라고 나와 있어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다른 文句가 안 들어 있어요, 여기에, 職級別 定員이라는 表現도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기 第103條에는. 지금 企劃管理室長께서 말씀하시는 職級別 定員이란 그 文字도 안 들어 있다고, 그냥 定員이라고만 들어 있지. 어디든지 보면 條例案에 公務員의 種類는 條例로 들어 갑니다. 種類는 條例로 들어가고, 그 定員에 대해서는 規則으로 들어 갑니다만 種類는 條例로 規定을 해야 돼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저희는 아직 그렇게 안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崔明鎭 委員님 말씀하신 것.....

○崔明鎭 委員; 第103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定員만 나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했습니다. 定員이라 함은 그 定員속에는 階級の 높고 낮음도 들어가 있고, 職種도 들어가 있고 다 포함된 것을 묶어서 덩어리로 表現할 때 定員으로 表現하는 것입니다.

○崔明鎭 委員; 그러면 이 條項에 職級別 定員이라는 表現이 들어가야 됩니다. 직급별 정원하고 그냥 정원은 그것은 분명히 틀립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柳準向 委員님!

○柳準向 委員;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現在 쓰레기 處理하는 現 制度의 豫算과 이번에 쓰레기 本部를 設置해서 이것 豫算하고 差額이 대개 얼마나 납니까? 裝備나 人件費나 모든 面에서.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年間 쓰레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裝備까지 다 합치면.....

○柳準向 委員; 아니, 今年에 91年度에는 1,200億원인가 얼마가 모자라서 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現 組織 體制로 다 運營을 해서 人件費나 裝備, 여기에 들어가는 돈과 이제 開設을 하면 人員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柳準向 委員; 그 前에는 課長이 둘밖에 없던 것이 지금 課가 몇 個면 더 負擔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人件費가 얼마나 差異가 나느냐 그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事務室 運營하는 人件費요?

- 柳準向 委員; 네, 人件費만.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事務室 運營하는 人件費는.....
- 柳準向 委員; 현재 2個 課 運營하는 것하고, 앞으로 本部를 設置했을 때 差異額이 얼마나 되느냐?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알겠습니다. 3億 4,000만원 정도 늘어나네요.
- 柳準向 委員; 그것 밖에 안 늘어나요?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 崔明鎭 委員; 지금 事業本部에 69億원이 清掃事業本部에 配定되었지 않았습니까?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 崔明鎭 委員; 來年度 豫算에 69億원 配定되었던데요, 알아보니까.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것은 事業費가 包畵된 것 아닌가요?
- 柳準向 委員; 한 가지 더 묻겠는데.....
- 崔明鎭 委員; 清掃事業本部에 69億원이 配定되어 있어요, 來年度 豫算案에.
- 柳準向 委員; 昨年度하고 今年度하고 對比를 해서 조금 이따 答辯해 주시고.....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조금 있다가 答辯해 드리겠습니다.
- 柳準向 委員; 네, 두 번째는 쓰레기 줄이기 改善策은 무슨 研究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根本的인 쓰레기를 줄이는 方向으로다.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쓰레기 줄이기 運動을 위해서 우선 家庭의 食卓에서 나오는 飲食찌꺼기 줄이기 運動, 그 다

음에 百貨店에서 包裝紙 줄이기 運動, 그 다음에 바구니를 가져가서 包裝 안된 狀態로 物件을 사들여 오는 그런 運動이죠, 그런 運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回用 안 쓰기 運動…….

○柳準向 委員; 그런데 根本的인 問題가 지금 무우, 배추 같은 것은 시골에서 整理해서 商品化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뽑은 그대로 다 갖다 쓰레기로 消費해서 다 갖다 버린다 그 것입니다. 이런 問題는 農協하고 協調를 해서 根本的인 對策을 좀 講究할 必要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百貨店에서 무슨 쓰레기 줄이기 運動 이것은 힘든 問題입니다. 자기 商品 팔아먹기 위해서 안에다 包裝 잘해야 팔리지 달랑 物件만 갖다 놓으면 잘 안 팔려요, 그 힘든 問題인데…….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 問題도 좀 深度있게 같이 檢討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準向 委員; 이 問題가 쓰레기 處理하는 問題에서는 제일 時急한 根本的인 問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쓰레기 줄이기 運動이.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옳은 말씀입니다.

(「나는 한마디도 오늘 안 했으니까 한마디만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한마디만 하십시오. 말씀하세요.

○李敏國 委員; 될 수 있으면 委員長님 고루 좀 주십시오.

○委員長 朴尙東; 네.

○李敏國 委員; 오늘 終日을 침묵시켰습니다. 簡單하게 저는 염려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 收去問題와 事業本部를 設置한다. 참 좋습니다. 제가 地域에서 苦悶하는 것은 各 家庭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을 어느 位置에다 갖다 모읍니다, 現在도요. 그러면 서

울特別市內에 중간 쓰레기荷置場 그리고 燒却을 하든 分離收去를 하든 하겠습시다만 지금 市民의 便利와 서울特別市の 便利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市民이 便利하는 便利와 서울特別市 執行機關에서 便利한 便利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淸掃本部가 생긴다고 해서 지금 室長님 조금 전에 自治區에서는 住民의 家庭에서 나온 쓰레기를 어느 일정한 場所에 모으는 것은 自治區에서 내내 똑같이 한다 그 나머지 移管되는 것이 淸掃本部에서 移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一般市民에게 주는 影響力은 똑같습니다. 지금 本部가 생겼어도 똑같습니다. 市民이 괴로워하는 것은 現在 쓰레기가 잘 수거가 되지 아니하고, 또는 어느 일정한 場所에 하치장을 만들었을 때에 빈 공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길가에 하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生活하는데 왜 우리 집 앞에만 쓰레기하치장을 하느냐 해서 어느 곳은 順番制로 무슨 洞 1番地 1號상에 했다가 다음에는 5番地 1號상에 옮기는 이런, 現在 狀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巨大한 새로운 조직을 해서 淸掃事業本部를 設置했을 때에 住民에게 써빙하는 行爲는 변함이 없다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特別市에서 필요한 것만을 事業本部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李敏國 委員님 말씀하신 市民이 便利한 것이냐, 市가 便利한 것이냐 하시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쓰레기를 收去해서 리어커로 수거해서 중간집하장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은 아직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집하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형리어카차로 중간집하장을 만들

기가 어려운 實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간집하장을 없앨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自治區에서는 그대로 收去業務를 아까 擔當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自治區 나름대로는 리어커를, 또는 그러한 形態의 차량을 이용을 해서 收去를 하는데 小型車輛으로써, 小型原動機車로써 運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李敏國 委員; 지금 現在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지금도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요. 하는데, 여기서 완전히 分離收去가 된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콘테이너에 의해서 壓縮車輛으로 이제 變化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壓縮車輛이 없어서 그것을 못했는데, 壓縮車輛을 대량 도입을 하게 되는데, 大型 壓縮車輛이 導入이 됩니다. 그 大型 壓縮車輛으로써 導入을 해서 收去 運搬을 하게 되면 지금 李敏國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部分은 解消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市民과 그 다음에 機械와 또 청소를 맡은 사람과 아무래도 3者가 호흡이 제대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분간은 많은 훈련이 서로 간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敏國 委員; 그러면 분리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분리하는 作業은 市民이 합니까, 清掃本部가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가정에서 나올 때 그것만 分離해 주시면 됩니다. 병, 깡통.....

○李敏國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現在는 分離가 안 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現在는 둘 또는 셋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보통.....

○李敏國 委員; 잘 안되고 있지요?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잘 안되고 있습니다.
- 李敏國 委員;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事業本部를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었을 때는 市民의 손을 거치지 아니하고 分類가 되냐 그말이죠.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일단 基礎分離는 市民들이 해 주셔야죠.
- 李敏國 委員; 그러면 現在 事業本部를 巨大하게 設置 아니해도 市民의 弘報를 통해서 市民이 엄밀하게 分離를 2段階, 3段階, 4段階, 5段階로 分離作業을 잘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지요. 市民들이 지금 分離作業을 안 해주시는 理由 中の 하나는.....
- 李敏國 委員; 본부가 없어서?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아니지요, 물건을 분리해서 놔주어도, 쓰레기를 분리해서 놔주어도 한꺼번에 몰아간다.....
- 李敏國 委員;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결국은 한꺼번에 몰아간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住民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 李敏國 委員; 事業本部를 설치하면 바로 事業本部 人員 가지고 그 裝備 가지고, 人員이 動員되어서 市民의 손을 거치지 아니해도 이분화된다, 삼분화된다 하는 것이 分離가 된다 그러면 說得力이 있고 쌍손을 들어 歡迎하겠습니다만 本委員이 알기에는 自治區에 쓰레기를 모으는 것은 現實의 施策과 동일하고 本부가 設置된다 하더라도 一但 家家戶戶에서 모아주는 것은 自治區 現在대로 하고, 그 나머지가 그 다음부터 本부로 移管이 된다고 하면 하나도 變化되는 것이 없습니다.
-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變化가 되지요.

○李敏國 委員; 變化된다고 하는 說得力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現在 서울市民에게 弘報가 얼마만큼 잘 되었느냐, 또는 어느 家庭은 잘하는 집도 있습니다. 대부분 분리수거가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洞事務所에서 이 問題를 가지고 무척 애를 쓴 사람이 저 李敏國입니다. 擔當官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만 事業本部를, 이렇게 엄청난 部署를 새로 組織을 해서 이것을 했을 때는 쓰레기가 잘 處理가 된다. 저는 현재 쓰레기 하치장이 70m 올라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만 市民들이 불편을 느끼는 제철에 제 시간에 履行을 안해준다, 쓰레기를 잘 안 치워 준다, 특별한 팁을 주어야 가져간다, 뭐 심지어는 집을 고치고 조금 벽돌조각이라든가 무슨 흙이라든가 쓰던 나머지 모래 같은 것이 나온다고 그러면 전혀 치워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分離가 아니라 庭園樹를 잘라서 썬팅을 하고 나뭇가지를 잘라 놓으면 절대 안 가져갑니다, 分離해 놔도. 理由는 특별한 팁을 주지 아니하면 절대 치워가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에 事業本部를 하면 市民들이 부드럽게 응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事業本部가 되었다고 해서 家庭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圓滿하게 市民 不便없이 치워진다는 이야기는 전혀 說得力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弘報를 열심히 하고, 指導層에서 열심히 하고, 市民이 그것을 응해 주었을 때, 100%로 分離를 해서 나누어 주었을 때 이것이 된다고 보지 事業本部를 엄청난 豫算을 들여서 11개 곳에다 이걸 해 놓는다 하더라도, 燒却場을 한다 하더라도 市民不便度는 전혀 덜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것은 事業本部를 두면서 研究라고 하는 연구반이 돌이지요, 研究所.

○委員長 朴尙東; 研究所 하나입니다. 간략하게 質問해 주시

기 바랍니다.

○李敏國 委員; 이 研究所가 清掃研究所가 3개가 있고, 專門職 研究所 2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研究所에서는 쓰레기를 自治區에서 거둬준 나머지 研究하는 겁니까, 全體를 研究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쓰레기 研究죠.

○李敏國 委員; 쓰레기?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李敏國 委員; 그럼 全體研究를 해서 分離도 앞으로는 市民의 손을 거치지 아니해도 分離收去할 수 있는 研究가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事業本部가 설치되는 것을 本委員은 원합니다. 그게 절대 안됩니다.

(「停會 좀 하지요」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李秉守 委員 質疑만 좀 듣고..... 간단히 하세요.

○李秉守 委員;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事務를 놓고 보는 見解에 따라서는 相反되는 評價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쓰레기 清掃問題에 관한 한 제가 상당한 造詣를 가지고 있어요. 천상 序論을 좀 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委員님들이 共感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를 조금 들어야 되겠는데..... 또 企劃管理室長 答辯도 委員이 알아야 쓰레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答辯이 틀린 것도 있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15萬坪 管理面積의 3,500세대 아파트 團地를 한 6년 동안 責任管理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聯合의 立場에서도 區廳, 서울市の 清掃關係로 욕 많이 했어요, 批判 많이 했어요. 여기 지금 現在 되고 있는 政策 中에서 제가 아이디어 낸 것이 反映되고 있는 것도 現在 있다고

요. 그런데 지금 저는 事業本部制 이것을 肯定的으로 보는 사람 中の 하나입니다. 왜냐, 水道局이 지금 水道事業本部로 發足되었지요? 그리고도 지금 堪當을 못해 찢찢매고 있잖아요. 現在 機構가 하루 쓰레기가 100톤 나올 時節하고, 1,000톤 2,000톤 쏟아지는 時代하고 전혀 달라요. 이 機構를 專門화 해서.....

아까 柳準向 委員께서 좋은 質問했어요. 事業本部로 機構를 확대해서 運營할 때 現行 制度보다 費用이 얼마 더 들어가느냐 하는 問題에 대한 疑惑이 사실 核心的인 質問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쓰레기가 500톤에서 1,000톤, 2,000톤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 機構도 擴張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費用이 더 들어가는 것도 常識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면밀히 보면서 이 自體 制度에 대해서는 肯定的으로 보는데 여기 清掃研究所라고 하는 것은 약간 옥상옥이다 이거예요. 研究所制度는 本部 안에 두는 自體는 조금 옥상옥인 것 같고, 또 職制上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附則條項에 가서 이것을 解體하면 現行 機構가 그곳으로 吸收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습니다.

○李秉守 委員; 吸收되면 大統領令에 의해서 그것이 폐지가 되기까지 聯關 고리가 附則에 連結이 안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한 서너 군데만 손보는 式으로 해서 이것이 되도록 우리 지금 별 專門性도 없으면서 自治團體에서 責任지고 이것 뭐 잘하자고 하는데 도와 줘야지요.

(「그만하고 停會 한 10분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8時 22分 會議中止)

(18時 44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尙東;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제가 먼저 質問하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네, 말씀하시지요.

○柳準向 委員; 지금 쓰레기處理本部를 設置해서 쓰레기 收去方法이 制度가 改善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現在 쓰레기 收去하는 方法과 淨化槽 收去하는 方法에 대해서 좀 具體的으로 說明을 해 주세요. 淨化槽 지금 用役 주어서 하고 있고, 쓰레기도 用役 주어서 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쓰레기는 가정 쓰레기가 일부 아파트 地域 또는 일반 單獨住宅에도 用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쓰레기 收去를 用役을 줘서 民間으로 하여금 많이 參與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民願이 나는 地域을 가보면 그것은 대부분 다 民間 代行業者들이 하는 그런 地域입니다. 그것은 人件費가 水準이 낮고, 作業環境이 너무 어렵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사람이 離職을 하고 그래서 제때 정일 收去를 못해 가고하는 그런 不便 때문에, 그래서 市가 아주 직접 市民들에 부딪히지 않는 몇 개 地域을 제외하고 나머지 地域에 대해서는 전부다 漸進的으로 市直營으로 지금 還元해 들어가고 있는 그런 實情에 있습니다.

○柳準向 委員; 그러니까 淸掃事業本部가 생김으로 해서 全體 市에서 直營할 이런 計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그렇습니다.

○柳準向 委員; 아까 豫算 얼마나 차이나나 確認해 보셨습니

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投資費面에 있어서 91年度에 1,235億원이 되는데 來年부터 1,928억원.....

○柳準向 委員; 그것은 제 質問에 答이 아닌데, 저는 현 體制대로 運營을 하면서 우리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從事하고 있는 우리 職員들이나 이런 問題의 豫算과 이 쓰레기 事業本部가 設置되어서 豫算의 差異額을 물은 것인데 1,200억원하고 1,800억원인가 얼마나 먼저 우리 豫算때 다 基本的으로 알고 있는 問題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이 쓰레기 收去를 하고 뭘하는 데는 우선 쓰레기를 치우는 制度가 改善되어야지 機構만 改善되어서 쓰레기가 원만히 잘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윗 대가리만 많이 생겨서 뭘 합니까? 우리가 編制가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問題인데, 6.25 事變때 人民軍하고 韓國軍하고 싸워서 진 理由가 뭘니까? 人民軍 1,000명이라 할 것 같으면 戰鬪人員이 950명이고, 非戰鬪要員이 550명입니다. 百戰百敗예요. 윗 대가리만 많은 겁니다, 지금. 2개 課가 거기 지금 課가 몇개입니까? 8개에다 위의 本部에 研究分野가 잔뜩 윗 대가리만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청소하는 것이고.

根本적으로 組織編制가 잘못 되었는데 이 問題는 組織統制를 다시 改善하고, 이제까지 民間人들한테 用役주어서 쓰레기를 收去하던 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要因이 많습니다. 지금 모두다 여기 公務員 되시는 분들은 좋은 아파트에, 富者村에 사시니까 그런 것을 皮膚的으로 모르겠지만 달동네 시골 個人住宅 가보십시오. 팁 많이 주는 집은 이틀에 한번 씩 치웁니다. 팁 안 주는 집은 일주일씩 갑니다. 그것뿐입니까? 큰 무슨 쓰던 용기 내놓으면 그것은 별도 料金 안주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대로 방치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부터 改善이 되어야지 清掃本部만 만든다고 해서 그런 問題가 해결 될 問題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機構가 우선 너무 假分數입니다. 윗 대가리가 크고 아래가 약할 것 같으면 쓰러집니다. 基礎가 약한데다가 위에 고층건물을 세우면 그 건물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구 좀 다시 손질해야 하고, 이 內容을 볼 때에 從前과 制度上에 변한 것이 별로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內容을 좀 改善해서 뭔가 우리가 1천만 시민한테 내놓을 때에 앞으로 쓰레기處理本部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앞으로 쓰레기를 잘 치우겠다 이런 뭐가 있어야지 윗 대가리만 큼직하게만 내놓고 밑에는 그대로일 것 같으면 쓰레기本部 만들 보람을 하나도 못 느끼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機構改編問題와 制度上의 問題와 制度上의 問題를 좋은 方案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지금 柳委員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좋은 指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機構를 먼저 만들 것이냐, 制度를 먼저 고칠 것이냐 하는 그런 立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件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일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위에 指揮部는 무슨 필요가 있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필요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의 모든 機構가 그런 面에서 再檢討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방치되다시피 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의 시민생활과 직결된 이런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制度라든가 모든 施設의 개선, 이런 것이 이러한 機構가 출발되면서 同時에 출발할

수 있도록 지금 萬般의 準備를 갖추고 있는데 어느 것을 먼저 택해야 될 것이냐, 制度改善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機構를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制度改善을 먼저하고 다 잘된 다음에 機構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柳準向 委員; 네,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 여기 지금 編制上에 總務部, 業務部 그게 그겁니다, 사촌간이에요. 거기가 거기지 總務部는 무엇이고, 業務部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部가 생기고, 또 部가 있으니까 그 밑에 課가 유사한 것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財力 가지고 가서 밑에 청소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더 雇傭을 하고 위를 좀 줄이자 이것입니다. 이 總務部, 業務部 물론 여기에는 뭐 뭐 뭐 한다지만 한 部로 묶어서도 밑에 課 하나만 더 두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總務部 밑에 業務課, 總務課 두어도 되는 것이지 꼭 總務部 따로, 業務部 따로 이렇게 두어야 합니까? 그런 類似한 것이 지금 여기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研究하실 用意는 없으십니까? 이 編制上에.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저희 나름대로 機構를 키우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려 놓은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도 충분히 檢討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企劃管理室長의 자리가 자리를 키우는 자리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 뭐 柳委員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柳準向 委員; 아닌 것은 아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키운 것 같으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네, 豫見하시기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苦衷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점을 좀 理解해 주시면 대단히 고
맙겠습니다.

○柳準向 委員; 委員長님 말입니다. 이 問題는 27일 오전까지
이 機構를 다시 좀 調整하고 制度面에서 개선해서 다시 한
번 그때 審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 意思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午前엔 時間이 안되니까 하려면 27일은 本
會議가 開議되기 때문에..... 26일 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柳準向 委員; 오후에 하니까 午前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崔明鎭 委員; 이번에는 否決시킵시다. 否決시키고 來年에
다시 그에 대한 全般的인 對策이나 清掃本部의 必要性에 대
해서 우리 委員들이 理解할 수 있고 납득이 되면 몰라도 現
在는 清掃本部의 設置할 必要性이 하나도 없는 것이 지금 結
論인데.....

○柳準向 委員; 아니지요. 제 意見은 조금 다릅니다.

꼭 필요로 합니다. 清掃問題가 시급한데 이것을 빠른 時日內
에 清掃問題를 좀 알차게, 市民이 원하는 대로 빨리 해 주어
야 할 시급한 問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意思是 機構
를 좀 調整하고 制度面을 改善해서 빠른 時日內에 다시 審議
해서 결정하는 것을 저는 正式으로 動議하겠습니다.

○全潤杓 委員; 同意합니다. 지금 柳準向 委員에 대해서 補充
說明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機構도 너무 龐大하고 또
우리 委員들의 納得도 안가는 事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市廳에서는 내일 모레 26일 우리가 續開할 때에 이
쓰레기 제도 關係도 한 번 더 說明을 해줘야 되겠고, 또 우리
委員들이 大體的으로 지금 問題가 생기는 것이 이 機構가 너
무 방대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清掃研究所는 없애는

것으로 우리 委員들이 거의가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 없었을 때의 문제, 그리고 청소국의 業務部를 削除하자는 이야기, 그리고 시설 1, 2部 統合해서는 안 되겠느냐 하는 등등이 우리 委員들 간에 오가고 있으니까 시청에서도 이 問題에 대해서 내일 모레까지 이 機構 改編案을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우리가 納得할 수 있도록 說明을 다시 해 주시고, 또 1항에 대해서도 기왕 했으니까 그날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散會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再請입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企劃管理室長과 關係官 여러분께서 오늘 委員들의 質疑內容을 충분히 理解와 納得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淸掃本部設置條例案에 대한 것을 조금 檢討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特別市財政投融資基金設置條例案 이 두 건과, 그 다음에 91년도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採擇건은 企劃管理室과 관계없습니다. 이 문제 3건은 26일 오후 2시에 다시 正式으로 上程을 해서 開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8時 56分 散會)

○出席委員

朴尙東 李聲九 蘇中天 全潤枸

柳準向 金順愛 李秉守 李敏國

朴別根 崔明鎭 金炯奎

○專門委員

安錫洙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市政研究官 康泓彬

技術審査官 崔慶竣

企劃擔當官 金光市

豫算擔當官 金禹奭

市政開發擔當官 李哲秀

法務擔當官 陳翼喆

技術審査擔當官 金南焄